

현안분석 2008-

비교법제 연구 08-07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

-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authenticity)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 -

남궁술 ·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

-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authenticity)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 -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European Cultural I

- The European Legal Issues for the Authenticity in
the Sale of the Art Works-

연구자 : 남궁술(경상대학교 교수)

Namkoong, Sool

박광동(부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08. 9. 30.

국문 요약

현재 한국의 미술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문화산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음악이나 문학 저작물과는 달리, 미술품은 그 진본성(authenticity)이 보장되어야 미술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眞本性) 확인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미술품의 위작 문제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므로 한국의 미술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매매미술품의 진본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물론 제도적으로도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미술품 전문 감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어느 나라도 공식적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시장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미술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감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 프랑스의 경우, 사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인증감정사제도를 통해 권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업무가 행해지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경매사에 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확연히 구분된다. 영국의 경우, 감정사와 마찬가지로, 경매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모의 경매회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경매사가 양성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만이 경매사(commisiseur-priseur)가 될 수 있다.

미술품전문 감정사, 경매사, 매도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영국은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 Act 1968) 상의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책임과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상의 ‘묵시적 보장책임’(Implied Warranty) 적용하고 있고 ; 프랑스는 착오(erreur)의 법리(프랑스 민법전 제1110조),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데크레”(Décret n° 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부과의 기준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위작 여부 자체가 아닌, 거래과정에서 의뢰인 또는 매수인에게 감정서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관련미술품과 일치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진본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프랑스의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제도와 같은 국가인증감정사제도의 도입, 미술품관련 감정서나 카탈로그 작성의 요식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 미술품감정에 관한 첨단과학기법의 도입 및 개발, 한국소재 미술품의 DB화, 경매나 아트페어와 같은 개방형 미술시장의 활성화, 미술품 감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의 마련 등과 같은 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키워드 : 미술시장, 진본성, 감정사, 경매사, 국가인증감정사

Abstract

Currently, the Korean art market is expanding rapidly. It is very positive to activate the art marke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However,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art market presupposes the security for the authenticity of works of art as merchandise, in difference with the works of music or literature. In the sale of the works of art, the authentication is very difficult and specialized work, which is obviously demonstrated by the problems of counterfeit frequently happened. For the stable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Korean art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regime by which we ensure the accurate authentication of the works of art for sale. For this purpose, we study European legal measures for the authenticity in the sale of the works of art, focusing on United Kingdom and France.

Concerning the expert qualification specialized in the works of art, there is no state, including United Kingdom and France, demanding certain mandatory rules. In the operation of authentication system, however, a little difference exists between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United Kingdom, art market is globalized, the authentication system operates autonomically via art experts, without any state intervention. But in France, for the purpose of the authentication reliable and authoritative, the operation of authentication system is intervened by means of the state attest system for experts, as by judicature or government.

Concerning the auction system, there is a certain difference between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United Kingdom, there is no official requisites for the qualification of auctioneers, whose training is executed by the auction company himself. But in France, for the qualification of

auctioneer called "commissaire-priseur", it is necessary to pass the state examination after completion certain courses and training.

For the legal liability of experts, auctioneers and art dealers, English law applicate the 'false trade description rule' found in the Trade Description Act 1968 and the 'implied warranty rule' found in the Sale of Goods Act 1979 ; French law applicate the mistake(french civil code, article 1110) and the "Décret n° 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It is notable that the test for imposition of these liabilities should be whether the state of goods conform to the descriptions illustrated in the certificate of authenticity or the catalog, rather than being counterfeit.

When we observe these english and french legal measures for authenticity, it seems necessary to complete,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n art market,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such as : introduction of the state attest system for experts as France ; legislation of a law which require the formalities in writing a catalog or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concerned with the sale of works of art ; introduction and exploitation of the hi-technology for authentication ; establishment of a data-base of the art collections in Korea ; activation of the open art markets such as auctions or art fairs ; systematical and financial support in state degree for the education of art authentication ; etc.

※ Key words : **Art market, Authenticity, Expert, Auctioneer, Expert attested by state**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내용	10
제 2 장 미술품 매매의 특성	13
제 1 절 미술품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상대성	13
1. 미술품 가치평가의 내용	13
2. 미술품 가치평가의 일반적 요소	16
3. 가치평가의 상대성	18
4.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감정사의 양성과 제도화의 필요성 ...	19
제 2 절 미술품 매매시장의 특성	20
1. 비공개거래시장	21
2. 공개거래시장	22
제 3 장 유럽(영국,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제도와 진본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27
제 1 절 미술품 감정제도	27
1. 영국의 감정제도	27

2. 프랑스의 감정제도	49
제 2 절 미술품 거래에서의 진본성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64
1. 영국의 법적 대응	65
2. 프랑스의 법적 대응	82
제 4 장 결 론	105
1. 진본성 확보방안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의 법적·제도적 특성 비교	105
2.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08
부 록	115
참 고 문 헌	121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현재 한국에서의 미술품매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기존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문화산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음악이나 문학 저작물과는 달리, 미술시장은 판매되는 미술품의 진본성(authenticity)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眞本性) 확인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독일의 한 미술관에 50년간 소장되었던 모네의 작품이 최근에야 위작으로 판명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섭이나 박수근 작품의 다량의 위작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²⁾ 그러므로 한국의 미술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매매미술품의 진본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물론 제도적으로도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인 문화국가이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미술시장으로서 미술품의 안정적

1) 이는 독일 쾰른의 발라프-리카르츠(Wallraf-Richartz) 미술관이 50년 전에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었던 모네의 “포르비에의 센느강”(La Seine à Port-Villet)이라는 작품이 최근 전시를 앞두고 검증을 통해 위작으로 판명된 사건이다. <독 미술관, 모네 위작 50년간 전시>, 연합뉴스, 2008. 02. 15 기사 참조.

2) 이는 고문서 수집가 김모씨에 의해 행해진 위작 작품 유통 사건이다. <이중섭 위작 2억여 원에 팔아>, YTN 2007. 11. 05 기사 참조.

매매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된 국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미술시장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위작들의 유통으로부터 미술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진본성의 확보문제는 미술품 감정(鑑定)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교한 위작기술과 더불어 진위여부의 감정을 위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진본성 판단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함은 물론 실제로도 진위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품의 진본성 평가의 핵심수단인 감정제도가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또한 이들 나라에서 진본성 확인이 모호한 경우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미술품매매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미술품의 감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기준들과 이들의 특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일반 상품의 매매와는 다른 미술품의 특수한 매매시장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럽(영국,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제도와 진본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에 관하여 알아본다. 우선,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미술품의 감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감정의 공신력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어떠한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미술품의 공개시장으로서 가장 신뢰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매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정사나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양국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진본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사들이나 경매사들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들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감정서나 카탈로그 작성과정상의 요건이나 형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 후에, 이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제4장의 결론에서는, 미술품매매에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응방안들에 관하여 각국의 특색을 비교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력이나마 정리해 본다.

제 2 장 미술품 매매의 특성

제 1 절 미술품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상대성

1. 미술품 가치평가의 내용

미술품의 매매와 관련한 가치평가에는 진위감정(authentication)과 시가감정(valuation)이 있다.

(1) 진위감정(authentication)

일반적으로 ‘authenticity’라는 용어는 ‘sincerity’의 유사어로서 ‘신빙성’, ‘확실성’, ‘진정성’이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그러나 전문영역에서³⁾ ‘authenticity’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실존철학에 있어서, ‘의식 있는 자아’(conscious self)는 물질세계와 타협하는 존재로, 그리고 자아(self) 자체와는 매우 다른 외부의 힘이나 압력 또는 영향과 타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authenticity’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격이나 정신 또는 성격을 간직하는 단계이다. 심리학에서, ‘authenticity’는 사회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내적 존재의 요구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용기와 관련된다. 한편, 예술철학에서 ‘authenticity’는 예술가가 역사적 전통이나 상업적 가치보다는 자기 자신에 충실하게 예술을 인식함을 나타낸다.⁴⁾

예술에서, 작품은 작가의 인격 내지는 성격이나 정신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가의 내면세계의 표출이기 때문에, ‘authenticity’는 단지 특정작가의 작품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그

3) ‘Authenticity’는 특히 실존철학과 예술철학 그리고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이다.

4) “authenticité”, in Les notions philosophiques I, PUF, 1990, pp. 193-194 참조.

작가의 성격과 세계관 모두를 나타내는 정체성(identity)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authenticity’가 미술품 가치평가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고 또한 본 연구가 ‘authenticity’를 우리말로 ‘진본성’이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진위감정(authentication)이란 하나의 주어진 작품이 특정의 작가에 의해 제작 되었는가 또는 특정의 역사적 지역이나 시대에 제작 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authentication’은, 비록 우리는 편의상 ‘진위감정’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쓰고 있으나, 본래 단순히 진위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아니라, 작품의 각 요소들(재료, 구성, 제작기법, 작가 등)의 연결성(coherence)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이다.

즉 특정 작가나 특정 시대의 어떤 미술품에 대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 작가나 시대의 정체성, 즉 진본성을 밝히고, 이렇게 해서 드러난 진본성을 기초로 감정대상이 되는 유사성 있는 작품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진위감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술이 사용된다.

하나는 주어진 물품의 특성과 원전(origin)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닌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감정사(experts)가 화법(畫法)의 유사성을 찾거나, 작가서명의 위치나 서체(書體) 등을 조사하는 일, 고고학자가 미술품의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탄소연대측정을 하거나 재료나 안료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일, 의뢰된 미술품의 구조나 장식을 유사한 원전품(original)과 비교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록에 기초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제시된 증거자료의 관리 또는 보관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작성된 기록물이나 과학적 조사를 통한 고증 등에 의해 행해진다. 일부 골동품들은 진본성을 보증하는 확인서 내지는 감정서를 수반하기도 한다.

(2) 미술품의 시가감정(valuation)

매매목적물은 항상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즉 가격결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내지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골동품 또는 미술품에는 이러한 객관적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⁵⁾ 이는 미술품이 일상적인 생활용품이 아님에 있어서 비롯된다. 즉 대체성이 없고, 가격산정에 있어서도 제작비용, 유용성, 기능, 편의성, 품질(재질),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등급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술품매매에서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미술품매매에서의 가격결정이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매매일수록 전문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다. 미술품의 시가감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이 요소에는 시가감정의 목적⁶⁾, 대상물의 시가감정이 행해지는 시장의 특성, 즉 구매가 행해지는 시장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의 특성⁷⁾, 시가감정의 유형 내지는 접근방식 등이 포함된다. 시가감정은 비용, 예상수입, 유사한 미술품의 이전의 매매데이터의 비교분

5) 예술품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넌센스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는 예술품은 상품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술품(특히 미술품)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한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힘들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평가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매우 가변적이고 주관적일 뿐이다. 배득중, “문화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화정책”,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1992년 2월, 249면 참조.

6)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구입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도, 상속 시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재산가치평가, 보험가입 시 보험금의 산정을 위하여, 기부나 미술품담보대출 시 재산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최병식(연구책임자), 한국미술품감정의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7면 참조.

7)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공예품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행해지는 곳이 한국이나 유럽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게 한국의 전통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가가 산정되게 된다.

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술품 시가감정사(valuer)는 미술품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 이러한 방면에 관한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⁸⁾

미술품의 시가감정(valuation)은 따라서 진위감정(authentication)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진위감정이 해당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본성을 평가하는 전문감정사(experts)나 경매사(auctioneers) 또는 이들의 조직에 의해 시가감정도 함께 행해진다.

2. 미술품 가치평가의 일반적 요소

진위감정(authentication)과 시가감정(valuation)으로 설명되는 미술품의 가치평가에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적 요소가 있다. 미술품의 작가(예술성, 독창성)와 역사성, 희소성, 보존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1) 작가(예술성, 독창성)

미술품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의 작품인가이다. 즉 작가가 유명작가인가 아닌가, 또는 생존 작가인가 아닌가에 따라 가치평가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그리고 한 작가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이 예술성과 독창성에 있어서 널리 인정받아야 한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으나, 오랜 문화적 축적과 경험을 통해 인간은 예술과 예술성의 존재를 느끼고 또 인정하고 있다.⁹⁾ 독창성이란 물론 다른 작가의 작품과 구별되는 작가 고유의 작품적 특성이다. 즉 독창성은 작가의 정체성(identity)으로도 표현되고 이는

8) http://www.vanweybergh.com/an_art_appraisal_is_not_an_art_authentication.htm

9) 예술성에 관하여 얘기하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앞서야 하는데, 이 또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단지 예술을 인간이 느끼는 정서적 감동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정서적 감동을 느끼는 사유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이 예술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본성(authenticity)의 핵심내용이다.

소위 직업적 예술가라 하면 어느 정도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작가 군(群)에서 어떻게 유명작가가 드러나는가? 이는 작가 내지 작품을 바라보는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적 기호(記號 와 嗜好)에 의해서라는 말 이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평가(내지 평론가)와 애호가(내지 수집가)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며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즉 시대와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2) 역사성

현존작가보다는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그리고 오래된 작품일수록 시가가 더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된 작품도 역사성에 기초한 감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역사성은 다음의 희소성 및 보존상태와 연결되어 작품의 시가감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역사성이 있는 미술품은, 위작의 발생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진위여부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술품매매에 있어서 주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3) 희소성

구하기 어려운 작품일수록 고가임은 물론이다. 즉 오래된 작품일지라도 시중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 희소성이 반드시 역사성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현존 작가의 작품일 지라도, 한 작가의 작품이 대량으로 미술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판화나 사진과 같이 재생산이 가능한 경우 등도 저평가의 요인이 된다.

(4) 보존상태

역사성이 있는 작품의 경우 보존상태가 우수할수록 고평가된다. 고미술품이 주로 문제되는데, 훼손부분의 복원이 행해진 경우, 복원부분의 정도 및 복원의 질이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3. 가치평가의 상대성

앞서 언급한 미술품 가치평가의 내용과 기준들은 실제의 평가작업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게 한다. 즉 감정사들은 미적 감각과 미술사적 지식 뿐 아니라, 작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른 작품재료와 기법에 관한 지식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의 정밀분석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의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 아울러 시가감정을 위하여 감정사들은 미술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해진 평가라 해서 항상 그 결과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역사성이 있는 고미술품이거나 유명작가 작품의 위작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즉 상당한 전문지식과 기법에 의해 위조된 작품의 경우,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실제로 감정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점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진 가치평가(진위감정과 시가감정)라 할지라도, 그 평가가 완벽하지 못하고 결국 상대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품 가치평가의 상대성은 미술품의 진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 시 감정인의 법적 책임 문

10) 국내의 경우, 천경자 작품의 위작논쟁, 靑田과 小亭 작품에 관한 시비 등 여러 작품들이 위작 논란에 휩싸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위작전문가들에 의해 위조된 작품들이 전 세계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최병식, “외로운 전문영역, 미술품감정을 주목해야 한다 - 이중섭사건을 계기로 본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과제 -”, 월간미술, 2005년 5월 참조.

제로 귀결되며, 따라서 감정인은 미술품의 감정과 감정서의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4.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감정사의 양성과 제도화의 필요성

위와 같은 미술품 가치평가결과의 상대성은 작품의 진본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미술품의 가치평가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할 경우, 미술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자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정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더불어 미술품감정이 공식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정절차와 요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술품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기구로 고미술은 ‘한국고미술협회’가, 근현대는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감정가협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감정사의 숫자는 2006년을 기준으로 모두 150명 정도로 판단된다고 한다.¹¹⁾ 이는 현재 3,000여 명의 감정관련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감정사 양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로는 화랑 주인들이 감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그 전문지식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이 행해질 우려도 많다고 한다.¹²⁾

11) 1971년에 설립된 한국고미술협회는 1973년도에 미술품감정위원회를 개설하여 2006년 현재 50명의 감정위원을 두고 있고, 1976년에 설립된 한국화랑협회는 1983년도에 미술품감정위원회를 개설하여 2006년 현재 28명의 감정위원을 두고 있으며, 2003년에 설립된 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35명의 감정위원을 두고 있다. 즉 이들 감정단체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모두 113명이다. 최병식(연구책임자), 한국미술품감정의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17면 참조.

12) 최병식, 전게서, 86면 ;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감정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연합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대학 내 ‘예술품감정학과’의 설치¹³⁾, 예술이론가와 박물관(또는 미술관)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및 연구시스템구축, 작가별 작품들의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국가 공인의 감정기구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¹⁴⁾ 그러나 신뢰할 만한 미술품감정에는 다방면의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미술품 감정사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미술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 2 절 미술품 매매시장의 특성

미술품도 법적으로는 물건의 일종(특정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술품의 매매방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도 없다.¹⁵⁾ 그러나 위조품매매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미술품은 작가와의 직거래, 신뢰할 만한 전문상인(화상)이나 화랑, 아트페어(Art Fair), 경매 등의 전문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술품의 특성상 동일물품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작가가 직접 제작하는 지극히 한정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나 종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술품 매매시장은 크게 비공개거래시장과 공개거래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¹⁶⁾ 비공개거래시장은 미술품의 거래내역이 일반적으로

뉴스(인터넷판), 2005년 10월 9일 기사 등 참조.

1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명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 문화예술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14)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감정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연합뉴스(인터넷판), 전제기사.

15) 그러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다.(예 : 수출의 금지, 문화재보호법 제21조; 매매의 신고, 동법 제59조 등)

16) 미술계에서는 미술시장을 1차시장, 2차시장, 3차시장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견해에 따라 1차시장과 2차시장에 속하는 시장의 종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1차시장은 작가와의 직거래를, 2차시장은 화랑이나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3차시장은 경매를 의미한다고도 하고(양현미(연구책임자),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

공개되지 않고 시장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을 말하며, 작가와의 직거래나 화랑을 통한 거래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공개거래시장은 미술품의 거래내역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시장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도 용이한 시장을 말하며, 아트페어나 경매 시장 등이 이에 속한다. 과거에는 작가와의 직거래나 화랑거래가 미술품매매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문화의 대중화와 더불어 경매나 아트페어를 통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1. 비공개거래시장

(1) 작가와의 직거래

작가와의 직거래는 물론 구매자가 작가와 직접 협상하여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확실하게 진품을 구입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화랑 등과 같은 중간거래상이 없기 때문에 작가와 구매자 모두에게 유익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생존해야 하고 또 구입 희망자가 작가와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가와의 직거래는 작가와 미술품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애호가나 작가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2) 화랑거래

화랑(gallery)이라는 용어는 알렉산더대왕 시대에 수집 미술품을 저택의 회랑(回廊:gallery)에 진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후 르네

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년, vii 면); 1차시장을 화랑거래를, 2차시장은 아트페어, 3차 시장은 경매를 말한다고 하기도 한다(김영식, “미술품의 가치판단과 시가감정”, Emotion, 2007년 겨울호, 174면). 이러한 구분은 미술품의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술품거래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공개거래시장과 공개거래시장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상스 시대를 거쳐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들의 미술품 수집이 늘어나면서 이를 감정하는 감정인들이 화상(畫商)을 겸하게 되었고, 17세기 이후에는 화상들이 미술품을 전시하는 화랑을 경영하게 되면서 오늘날 화랑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화랑이 미술품감상의 장소로서 대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¹⁷⁾

화랑은 일정한 작가와의 계약을 하여 개인전 또는 단체전의 전시회¹⁸⁾를 개최하고 이러한 전시를 통하여 작품거래가 이루어진다. 전체 미술시장에서 화랑을 통한 거래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화랑이 미술품거래의 주된 매체임은 틀림없다. 화랑이 현존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 진품거래의 신뢰가 높으나, 현존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나 특정 수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특히 작품에 관한 진본증명서나 감정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작품의 진본성에 관한 보증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화랑거래는 주로 화랑과 수집가들의 관계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미술품가격의 투명성 및 미술시장의 대중적 확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2. 공개거래시장

(1) 경 매

오늘날 가장 대중적이고, 국제적이며, 다양한 미술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미술품전문 경매시장이다.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매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로

17) www.encyber.com 참조.

18) 그밖에, 화랑의 전시회는 전시의 비용부담관계에 따라 대관전, 기획전, 초대전으로 구분된다. 대관전은 대관료 및 전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가가 부담하는 전시이고, 기획전은 작가가 대관료를 부담하지 않고 도록제작비만 부담하는 것이고, 초대전은 전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화랑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김영식, 전계논문, 174면 참조.

마 시대의 경매에는 전리품을 비롯한 미술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 문화 되지는 않았으며, 미술품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라고 한다. 18세기에는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런던에 설립되었고, 이후 이들은 국제적인 경매회사로 성장하여 전 세계 미술품거래량의 2/3 가 이 두 회사를 통해 행해졌다고 한다.¹⁹⁾

한국의 미술품전문 경매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즉 1999년에 Seoul Auction (www.seoulauktion.com)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고, 지난 2005년에는 K-Auction (www.k-auction.com)이 설립되어 비로소 현대화된 경매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들 경매회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미술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서 미술품경매 뿐 아니라 미술품담보대출도 하고 있고, 또한 미술 및 미술시장에 관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경매시장은, 첫째, 고미술품에서 현대미술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미술품거래가 행해지고; 둘째, 전문경매사의 안내에 따른 입찰이 행해지기 때문에, 입찰자들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셋째, 입찰이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판매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거래가 투명해지고 미술품가격의 불확정성이 감소되며; 넷째, 대중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²⁰⁾

그러나 경매회사의 지명도와 권위를 믿고 구매자들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신뢰할 만한 감정능력, 제도적 장치, 경제구조의 성숙 등과 보조를 같이하며 진행되어야 할 문제”²¹⁾이며, 또한 위작경매가 행해지는 경우 경매회사 및 경매사의 책임을 어디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의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19) 자세한 것은 양현미(연구책임자), 전게서, 74면 이하 참조.

20) 박우찬, “미술품 경매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미술세계, 1993년 3월, 63면; 양현미(연구책임자), 전게서, 6면 참조.

21) 박우찬, 전게논문, 65면.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감정이 행해질 수 있는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술품의 시장가격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미술품의 거래를 투명화 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아트페어와 함께 미술품전문 경매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²²⁾²³⁾

(2) 아트페어(Art Fair)

아트페어(Art Fair)란 한 장소에 다수의 화랑이 모여 국내 또는 국제 규모의 집단적인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아트페어는 작품판매 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의 활성화, 화랑간의 정보교환 등 여러 목적을 위해 개최된다. 아트페어는 참여한 각 화랑 별로, 그리고 화랑에서 선정 또는 초대한 작가 별로 부스(booth)를 만들어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작품의 거래내역이 공개된다. 그리고 아트페어는 규모가 화랑전시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의 관람률이 높고, 또한 대가들의 작품보다는 장래성 있는 신진작가 내지는 중진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기 때문에 작품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대중들의 작품구매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아트페어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각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세계적 규모의 아트페어가 각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살려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유명 아트페어를 분류해 보면 프랑스 파리의 FIAC전, 스위스의 Basel Art Fair, 미국의 Chicago Art Fair, 독일의 Köln Art Fair 등이 4대 아트페어에 속하고, 그 외에 독일의 Cologne, 스페인의 ARCO, 판화 아트페어로 유명한 프랑스 SAGA전 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1995년 ‘서울국제아트페어 MANIF’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22) 정준모, “한국 미술시장의 미래를 위해”, Emotion, 2007년 겨울호, 170면 이하 참조.

23) 현대에는 인터넷의 일반화와 더불어 미술품의 인터넷 경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아트페어(KIAF)도 개최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면에서 다른 외국의 아트페어에 비해 작은 편이다.

아트페어는 한 장소에서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품거래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아트페어의 특성 상 년 1회에 한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에 상시적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제 3 장 유럽(영국,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제도와 진본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미술품 위작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술품의 거래규모가 큰 외국에서 위작문제가 심각하다. 즉 그 시장이 큰 만큼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술로 다량의 위품을 제작하여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 1 절 미술품 감정제도

미술품의 감정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 공인의 감정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는 미술품 종류의 다양성과 제작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결국 감정사 자격에 관한 공식적 요건도 없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사들의 개별적 능력과 이에 대한 신뢰를 통해 감정이 행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미술품유통의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미술시장의 신뢰도유지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이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영국의 감정제도

영국은 아직 국가공인의 감정기구나 감정서가 없다.²⁴⁾ 그러나 영국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갖춘 감정사들이 많다. 따라서 감정은 이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나, 권위 있는 박물관이나 여

24) 전문가에 의하면 영국 내에 거래되는 미술품의 10~40%가, 경매회사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15%가 위품이라고 한다. 최병식(연구책임자), 한국미술품감정의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145면 참조.

러 사립 감정단체 또는 경매회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이나 박물관 및 경매회사 등에 의한 체계적인 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유능한 감정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영국의 감정제도에 관하여 우선 감정을 실시하는 단체나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감정사의 현황과 자격 및 감정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1) 감정단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품의 가치평가는 진위감정(authentication)과 시가감정(valuation)에 의해 행해진다. 영국의 감정단체는 크게 진위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시가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다.

1) 진위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

1-1) 옥스퍼드 오펜티케이션(Oxford Authentication)²⁵⁾

A. 개 요

Oxford Authentication은 1997년에 설립된 감정전문회사이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지금까지 18,000여 건의 감정을 실시하였고, 전 세계 주요 박물관이나 경매회사 또는 미술품 상인이나 수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Oxford Authentication은 홍콩,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등에 50명의 해외 대리인(representatives)을 둔 국제적인 network을 갖춘 회사이다. Oxford Authentication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열발광법(TL : thermoluminescence)이라고

25) Oxford Authentication사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해당 사의 Home page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www.oxfordauthentication.com 참조. 그밖에 최병식(연구책임자), 전개서, 164면 이하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하는 세계 최고의 감정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책임자는 물론 감정담당자들도 Oxford 대학과 대학실험실에서 다년간의 연구와 실험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의 창업자이자 디렉터인 도린 스톤햄(Doreen Stonham)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 후 Oxford 대학의 미술사 및 고고학 연구실험실에서 27년 동안 50,000여 건의 감정 경험이 있고 도자기감정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감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되고 있다. Oxford Authentication사가 도자기 및 청동기 제품의 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B. Oxford Authentication사의 감정기술 : thermoluminescence(TL)

TL, 즉 열발광법이란 대상물체에 고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대상물의 제작시기를 알아내는 감정기술이다. 광물은 자외선(ultraviolet)이나 이온방사선(ionizing radiation)에 노출되면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광물이 가열되면 이 에너지가 빛의 형식으로 방출된다. 이 때 방출되는 빛의 양은 흡수한 방사선의 양에 비례하는데,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열발광법 연대측정이다. 즉 대상물의 제작시기가 오래될수록 보다 많은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가열 시 방출되는 빛의 양도 그 만큼 많아진다. 이 열발광법 연대측정기술은 도자기나 기타 가열 제작된 고고학적 물체의 연대측정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열발광법 연대측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에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고열을 가해 이 샘플에서 나오는 미세한 푸른 빛의 강도를 ‘열발광판독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방법을 통해, 감정대상물의 제작시기라고 주장되는 시대와 동시대에 제작되었고 진품으로 공인된 동질의 고미술품의 빛의 강도곡선과 감정대상물에서 측정된 빛의 강도곡선을 비교함으로써 감정대상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Oxford Authentication사의 열발광법 실험실(TL laboratory)은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3대의 ‘열발광 판독기’(Riso Minsys TL readers)가 있는데, 컴퓨터에 의해 전자동으로 작동되는 이 판독기들은 지속적으로 update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열발광 판독기’에는 Photomultiplier tubes라는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이 photomultiplier tubes가 열발광을 측정하는 핵심장치이다. 몇몇 샘플의 경우 발광신호(TL signal)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장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photomultiplier tubes가 특별히 선정되어 열발광 측정기에 장착된다.

측정 대상물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대상물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Oxford Authentication사는, 다이아몬드 톱날이 부착된 도자기 절단 목적의 저속 드릴기구, 흐르는 물 아래서 절단 시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기 위한 ‘고특성 증기흡입반’(high specification fume cupboard), 건조 오븐, 샘플준비를 위한 원심분리기(centrifuge) 등을 사용하고 있다.

Oxford Authentication사의 실험실은 로이즈 레지스터 품질 보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으로부터 ISO 2000을 부여받은 세계 유일의 열발광법 실험실이다.

C. 열발광법 감정과정

a) 샘플채취(sampling)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감정은 샘플채취에서 시작된다. Oxford Authentication사의 열발광법은 도기(pottery)나 자기(porcelain) 또는 청동주물(bronze casting cores)에만 행해지고 채취방법도 대상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기(pottery)의 경우, 외관상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100mg 가량의 가루가 채취된다. 자기(porcelain)는 도기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어지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자

기는 반드시 흐르는 물 아래에서 다이아몬드 심으로 된 드릴로 샘플 채취가 행해진다. 4mm 길이에 3mm 직경에 해당하는 2개의 실린더가 자기의 바닥부분이나 유약이 없는 부분에서 추출되고, 이들은 다시 다이아몬드 휠(wheel)에 의해 200micron 두께의 조각으로 잘라져 최종 감정 샘플이 된다.

청동기 유물의 주변에는 종종 점토로 된 주형이 묻어 있다. 그리고 이 점토주형은 손잡이, 다리, 머리 또는 토르소와 같은 속이 빈 부분 안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 점토가 청동기에서 추출되면 도기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b) 감 정

준비된 가루샘플을 아세톤(acetone)에 침전시킨다. 작은 입자들을 알루미늄 디스크에 올려놓고 하루 동안 말리면, 열발광도 분석(TL analysis)이 가능하다. 큰 입자들은 열발광도 분석에 사용되지 않지만 방사선분석의 대상이 된다. 청동주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준비된다.

측정은 열발광 판독기(TL readers)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판독기는 가열(heating) 및 실험방열(laboratory irradiation)을 통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방사선분석은 알파파 계측기(Elseco thick source alpha counters)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열 및 방열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가 열발광 판독기(TL readers)에 의해 분석된다. 열발광 신호(TL signal)는 조도곡선(glow-curve)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온도에 대한 빛의 강도를 의미하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자연적 또는 고고학적 조도곡선과 실험방열 이후에 얻어진 곡선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는 최종적으로 구워진 이래 대상물에 흡수된 방사선의 총량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알파파 계측기에 의한 방사선분석은 내부의 연간 방사선량 비율을 제공한다. 이러한 총량에 대한 환

경적 영향은 연대측정된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대략적 연대측정은 ‘흡수된 방사선 총량’(열발광 판독기 분석)을 ‘연간 방사선 비율’(알파과 계측기 분석)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측정되는 인용연대범위(quoted age limits)는 $\pm 20\%$ 이다.

열발광법은 도기나 자기 또는 청동기유물의 진본성 평가에 가장 신뢰받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 기술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진본성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 기술은 제작시기에 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법이다. 더불어 이 기술은 구워지지 않은 점토는 물론 후에 보수된 부분도 구별해낸다. 그러나 대상물에 관한 보다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X선은 외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착물이나 보수부분을 보여준다. 그리고 적외선분광기(Infrared Spectrometer)를 이용하는 기술의 하나인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은 점토의 유기적 구성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대상물을 강화시키거나 재구성하는데 사용된다.

1-2) 영국 고미술 딜러 협회(BADA : The British Antique Dealers' Association)²⁶⁾

A. 영국 고미술 딜러 협회(BADA)²⁷⁾의 소개

BADA는 영국의 고미술품 거래를 주도하는 딜러들의 단체이다. 1918년 회원딜러들 간의 물론, 고미술품 매매에 있어서 이들과 대중 사이의 신뢰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BADA는 고미술품 거래를 위한 거래표준을 만들어 왔다.

26) 이하의 내용은 영국 고미술 딜러 협회의 Home Page(www.bada.org)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27) 이하 BADA라 칭한다.

BADA는 일종의 직업적 조직으로서, 거래표준을 잘 지키고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딜러만이 BADA의 회원으로 선정된다. BADA 회원들은 엄격한 BADA의 내규(Bye-laws)를 준수해야 하고, 회원으로 선정된 이후 이들은 매년 위원회(Council)의 확인과정을 통해 회원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BADA 회원들은 BADA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고품격의 전문매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BADA에 의해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BADA에 소속된 딜러와 고미술품을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는 약 400여명의 고미술품 딜러가 BADA에 소속되어 있다. BADA는 내규(Bye-laws)에 고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조항들을 둬으로써 BADA 소속 딜러와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 분쟁의 발생 시 무료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관련분야에서 최소한 3명의 전문가를 패널(panel)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B. 고미술품 평가 서비스(Antiques Assessment Service)

BADA의 고미술품 평가 서비스란, 가치 있는 고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BADA에 의뢰하여 소장품의 가치와 제작연대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²⁸⁾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BADA가 선정한 3명 이상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품을 BADA²⁹⁾에 보내야 하고, 이 경우 의뢰품은 BADA의 관리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된다.

28) 이는 시가감정(valuation) 서비스가 아니다. 시가감정은 BADA 소속 딜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평가료는, 의뢰인이 대상물을 BADA에 보내는 경우(우송료도 의뢰인이 부담함) £293.75이고, 특별히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평가가 행해지는 경우 £587.50이다.

29) London의 Knightsbridge에 위치하고 있음.

고미술품 평가 서비스에 물품이 의뢰되면, BADA는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평가단에 선정된 전문가들은 의뢰품의 제작시기, 특징 및 진본성 등에 관한 견해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평가서면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든 지식의 범주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된 조사와 검사를 마친 후에 신의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BADA는, 감정 및 평가의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자주 견해의 차이가 발생함을 들어, 서면에 표시된 견해의 정확성에 대해 BADA는 물론 평가단에 포함된 어떤 전문가도 완벽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3)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의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³⁰⁾

A. 개 요

1759년에 설립된 대영박물관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고고학 및 민속학 박물관 중의 하나로 꼽힌다. 대영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수집된 소장품들의 체계적인 전시와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세계의 각 지역별 내지 소장품목별로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이들 부서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아메리카 부서(Department of Africa, Oceania and the Americas) ; 고 이집트와 수단 부서(Department of Ancient Egypt and Sudan) ; 아시아 부서(Department of Asia) ; 주화 및 메달 부서(Department of Coins and Medals) ; 그리스와 로마 부서(Department of Greece and Rome) ; 중동 부서(Department of Middle East) ; 휴대 가능한 고미술품 및 보물 부서(Department of Portable Antiquities and Treasure) ; 선사시대 및 유럽 부서(Department of Prehistory and Europe) ; 프린트 및 드로잉 부서(Department of Prints and Drawings)가 있다. 그런데 이들 부서는, 휴대 가능한 고미술품 및 보물 부서(De

30) <http://www.britishmuseum.org/default.aspx>. 이하의 내용은 대영박물관 Home page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partment of Portable Antiquities and Treasure)를 제외하고는, 모두 ‘Object identification’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bject identification’은 일반인들이 해당 부서의 소장품목과 연관성이 있는 물품을 가져오면 담당 큐레이터나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고³¹⁾ 각 부서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순수하게 대중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박물관은 감정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감정서 또한 작성해 주지 않고 시가감정(valuation)은 하지 않는다.

B. 감정절차

감정절차는 각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부서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 부서의 연구실(Study Room)에서 행해진다.

a)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아메리카 부서(Department of Africa, Oceania and the Americas)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아메리카 부서’는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Collections Enquiry Service’(수집품 조회 서비스)라 불리는 연구실(Study Room)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Collections Enquiry Service’실은 대중들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아메리카 부서’의 소장품목과 연관 있는 수집품의 조회나 연구를 목적으로 이 부서를 접촉할 수 있는 창구이다. ‘Collections Enquiry Service’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10.00-12.00시 그리고 13.00-16.45시까지 개방되며 사전 약속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31) 그러나 박물관 측은 의뢰인에게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b) 고 이집트와 수단 부서(Department of Ancient Egypt and Sudan)

이 부서에서의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14.00-16.30시까지 Study Room에서 행해지며, 사전 약속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부서는 Study Room의 공간적 제약 상 적어도 2주 전에 약속을 잡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c) 아시아 부서(Department of Asia)

‘아시아 부서’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고미술품과 연관된 물품들의 감정과 일반적 조사 의뢰에 응한다.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14.15-16.00시까지 Study Room에서 제공된다. 의뢰 물품에 관하여는 대략적인 제작시기(probable date)와 역사적 의미(historical context)에 관한 견해만을 제공할 뿐, 시가감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전문가의 견해를 얻기 위해 물품을 직접 가져올 경우³²⁾, 안내데스크(Information Desk)에서 ‘visitor object pass’(방문인의 물품통과허가)를 받아야 한다.

d) 주화 및 메달 부서(Department of Coins and Medals)

‘주화 및 메달 부서’의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많이 개방된 편이다. 즉 물품을 직접 가져올 경우, 수령증(receipt)이 부여되고 가능하면 당일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감정을 위하여 우편으로 물품을 ‘주화 및 메달 부서’에 보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1회에 10개 이상의 물품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다.

Study Room은, 수요일 오전을 제외하고, 주중에 10.00시부터 13.00시까지, 14.15시부터 16.00시까지 개방된다.

32) 이 경우, 최대 3개의 물품까지만 통과가 허락된다고 한다.

e) 그리스와 로마 부서(Department of Greece and Rome)

‘그리스와 로마 부서’도 주중에 14.00시에서 16.30시 사이에 물품을 가져오면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 중동 부서(Department of Middle East)

‘중동 부서’도 상당히 개방적으로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박물관의 개방시간 동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당일에도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얻을 수 있고, 당시에 큐레이터가 없거나 다른 큐레이터나 부서의 견해가 필요할 경우 물품은 보관되어 추후에 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예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전 예약을 권유하고 있다.

g) 선사시대 및 유럽 부서(Department of Prehistory and Europe)

‘선사시대 및 유럽 부서’도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별도의 예약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주중에 14.00시에서 16.30시 사이에만 Study Room³³⁾에 관련 물품만 가져오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후에는 Study Room이 매우 붐비기 때문에 부서의 전문가들은 주어진 시간에 제한된 수의 물품만을 감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물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권유되고 있다.

h) 프린트 및 드로잉 부서(Department of Prints and Drawings)

‘프린트 및 드로잉 부서’는 판화나 드로잉 또는 수채화에 관한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나, ‘프린트 및 드로잉 부서’는 종이에 제작된 서양의 작품만을 감정한다. 이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Study Room의 개방시간(10.00 - 13.00 및 14.15 - 16.00)에만 실시된다.

33) 이 부서에는 3개의 Study Room, 즉 Horological study room(시계연구실), Neolithic to Modern collection(신석기 유물 연구실), Franks House(구석기 및 중석기 유물 연구실)이 있다고 한다.

2) 시가감정(valuation)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

미술품의 시가감정은 재산상속시 상속세계산을 위한 재산평가 또는 보험가입 시 보험금 산정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미술품 매도나 구입의 목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시가감정을 하는 단체는 주로 미술품 매매나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2-1) 예술 및 고미술품 딜러 협회(LAPADA : The Association of Art & Antiques Dealers)³⁴⁾

A. LAPADA 소개

LAPADA는 미술품 내지 고미술품을 취급하는 딜러들을 중심으로 1974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매장에 금빛 상들리에 표식의 문장이 부착된 경우, 이 매장이 LAPADA 소속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LAPADA는 600명 이상의 딜러들이 가입한 영국 최대의 미술품 전문 딜러단체이다. 대부분의 회원이 영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16개국에서 60여 명 가량의 외국인 딜러들도 가입되어 있다. LAPADA 회원자격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매장의 품격 등에 대해 LAPADA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딜러들에게만 부여된다. LAPADA 회원들은 고미술품에서 현대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LAPADA 회원들의 전문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LAPADA는, 대중들이 안심하고 LAPADA 회원들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내용의 ‘거래규정집’(Code of Practice)을 만들어 이를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회원인 딜러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LAPADA의 무료조정서비스(free conciliation service)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³⁵⁾

34) 이하 LAPADA라 칭한다. LAPADA에 관한 내용은 이 협회의 Home page(www.lapada.org)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35) 이러한 점에서 LAPADA는 앞에서 언급한 BADA(영국 고미술품 딜러 협회)와 그

B. LAPADA의 시가감정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시가감정은 매매 이외에, 보험가입, 상속세의 산정, 재산분할 등 다양한 이유에서 행해진다. 시가감정은 그 감정의 목적에 따라 평가해야 할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절차가 그리 단순하지가 않고 또 부여되는 감정가가 달리 나올 수 있다.

보험목적의 시가감정의 경우, 대체로 국제적으로 최고의 가격에 해당하는 소매의 대체물에 적합한 가격산정이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가감정은 시장의 변화하는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을 이유로 하는 시가감정은 실제의 시장가격에 의거해야 하되, 산정가치에 따른 상속세의 비율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평가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시장이 유행과 경제사정에 따라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감정된 가격은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일 수 없다. 더욱이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진본성이나 시장의 기호에 대해 언제든지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인 시가감정사는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업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과오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³⁶⁾

LAPADA의 시가감정에 대한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별로 감정에 소요된 시간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이 경우 조사시간도 포함되며, 이동경비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다 고 한다.

구조와 기능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BADA는 그 역사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회원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단체이다.
36) 감정사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2-2) 거 존스(Gurr Johns)사³⁷⁾

A. Gurr Johns사 소개

Gurr Johns는 1914년에 설립된 아트 컨설팅 및 시가감정 전문회사이다. Gurr Johns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파리, 뉴욕 및 뮌헨에 지사를 둔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미술시장 전 분야의 경제 및 재무 분석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Gurr Johns의 고객은 개인수집가나 박물관과 같은 조직체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B. Gurr Johns사의 시가감정

Gurr Johns는 팀으로 구성된 전문 시가감정사들이 세계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전문적인 시가감정 회사이다.

시가감정을 의뢰한 고객은 그 결과를 증서(certificate)로 받게 되며, 더불어 상세히 작성된 미술품소유목록과 소장미술품들의 디지털 사진과 설명이 포함된 CD도 함께 받게 된다.

Gurr Johns는 개인수집가들 뿐만 아니라 미술품관련 보험회사나 은행 또는 로펌 등으로부터도 많은 감정의뢰를 받는다. 이는 Gurr Johns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록의 보안이 완벽하고 고객의 신원보호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Gurr Johns사의 시가감정 수수료는 일반 개인 감정사보다 비싼 편이고, 수수료 산정은 감정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인 시가감정 이외에 Gurr Johns사는 ‘정기적 시가감정 서비스’(managed valuation service)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미술품들의 시가감정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수집가 뿐만 아니라 박물관

37)이하는 Gurr Johns사의 Home page(www.gurrjohns.com)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단체에도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국제화된 미술시장의 역동성에 따른 미술품의 정확한 시가감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기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수집가나 단체의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다.

2-3) 크리스티스(Christie's) 경매회사³⁸⁾

A. Christie's 소개

1766년 James Christie에 의해 설립된 Christie's 경매회사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현재 Sothebys 경매회사와 함께 세계 미술품거래를 주도하고 있다.³⁹⁾ Christie's는 모든 종류의 미술품은 물론 보석류, 사진, 기타 수집용 포도주나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총 80여 종 이상의 물품을 매년 600여 회에 이르는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Christie's는 43개 국가에 85개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고, 런던, 뉴욕, 로스앤젤스, 파리, 제네바, 밀라노, 암스테르담, 텔아비브, 두바이, 홍콩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모두 1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Christie's는 최근에 'Christie's LIVE'라는 Web site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Christie's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Christie's의 시가감정

Christie's의 시가감정부서(Valuations Departments)는 매매, 보험, 과세 등 다양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시가감정을 하고 있다. 시가감정은 14명의 일반 시가감정사(general valuers)와 시가감정 관리자(valuation managers)로 구성된 팀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데, 이 팀은 Christie's

38) www.christies.com

39) Christie's는 2007년에 경매를 통한 총 매출액이 6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의 각 부서의 전문가들(specialists)과 협력하여 시가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Christie's의 시가감정 수수료 산정은 전문가가 감정에 소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험목적의 시가감정의 경우, Christie's는 전 수집품목을 통하여 가장 전문적인 보험목적의 시가감정을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즉 보험약관에서 자주 요구되는 사항 뿐 아니라 고객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⁴⁰⁾ 그리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최종의 감정서 작성의 단계에까지 Christie's는 고객이 접촉하는 담당자를 단일화하여 시가감정의 전 과정을 고객에게 공개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매매목적의 시가감정의 경우, Christie's는 다양한 종류의 소량의 미술품 뿐 아니라, 한 개인 또는 단체의 모든 수집품들에 관한 시가감정도, 시가감정부서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Christie's는 해당 작품의 매매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언도 한다고 한다.

세금목적의 시가감정의 경우, 시가감정부서는 Christie's의 '상속 및 조세 자문 서비스'(Heritage & Taxation Advisory Services)⁴¹⁾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업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세금에도 정확한 전문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속세 또는 기타 세금의 납세계획까지도 마련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시가감정 이외에, Christie's는 Christie's에서 거래되는 전형적인 품목과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물품에 대한 '경매 추정가 산

40)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요구되는지는 추후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41) 이 서비스는 미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동산재산에 대한 세금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매회사 중 Christie's가 1970년에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서비스라고 한다.

정'(Auction Estimates)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Christie's를 직접 방문하거나 Home page에 On-line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⁴²⁾ 그러나 이 서비스는 단지 물품의 추정가치에 대한 견해제공에 불과할 뿐 Christie's가 보장하는 시가감정이 아님을 단서로 하고 있다.

2-4) 소더비스(Sothebys) 경매회사⁴³⁾

A. Sothebys 소개

Sothebys는 1744년 영국의 서적 판매업자인 Samuel Baker에 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수집품⁴⁴⁾ 전문 경매회사이다. 1778년 Baker의 사망 이후, 이 회사는 그의 조카인 John Sotheby에게 승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Sotheby 가문은 사업 영역을 판화나 메달 동전 등의 수집품 경매로 확장하여 본격적인 미술품 경매 전문회사로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Sothebys를 만들었다.

1964년 미국 뉴욕의 Parke-Bernet 경매회사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 Sothebys는 파리,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멜버른, 플로렌스, 토론토, 주리히, 뮌헨, 에딘버그 등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Sothebys는 연간 약 24억 달러 이상의 경매실적을 기록하며 경쟁회사인 Christie's와 함께 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⁴⁵⁾

42) 물론 이를 위해서는 평가 대상 물품의 상세한 앞 뒤 컬러사진, 작가사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근접사진, 크기나 무게 및 재질 등에 관한 정보, 취득의 전후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Christie's에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Sothebys 경매회사도 제공한다.

43) 이하의 내용은 Sothebys의 Home page(www.sothebys.com)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44) 설립 후, S. Baker는 주로 소장가치 있는 책들을 경매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

45) Sothebys는 한국의 미술품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1990년에 소더비즈 서울지점을 열었고, 1991년 뉴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미술품 단독경매를 실시,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내정가의 10배인 176만 달러에, 김홍도의 《사계도(四季圖)》가 46만 달러에 팔리는 등 대성황을 이루면서 한국 미술품을 세계

2000년에 Sothebys는 www.sothebys.com을 개설하여 세계 최초로 국제적인 인터넷 경매를 실시하여 미국 독립선언문의 첫 번째 인쇄물을 800만 달러에 낙찰시키는 등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eBay의 Live Auctions service를 통하여 Sothebys의 전통적인 경매장에 인터넷 입찰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B. Sothebys의 시가감정⁴⁶⁾

Sothebys의 시가감정은 ‘유럽 시가감정 부서’(European Valuation Department)에서 담당한다.

Christie’s와 마찬가지로 보험, 상속, 자산관리, 납세계획, 매매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시가감정을 실시한다.

시가감정은 Sothebys의 모든 전문 부서에서 통상 다루어지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가감정 수수료에 관한 산정은 소요시간별에 의하거나 미리 정해진 기본비용으로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총 작업량과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

Sothebys도 Christie’s와 마찬가지로 ‘경매 추정가 산정’(Auction Estimates)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한다. 엔사이버 백과사전([ww.encyber.com](http://www.encyber.com)) ‘소더비스’ 참조.

46) Sothebys의 Home page는 시가감정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추측컨대 Christie’s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시가감정이 행해질 것으로 여겨지나,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Home page에 기록된 내용만을 간단히 옮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추후의 조사를 통해 소개하기로 한다.

2-5) 미술품 경매사 및 시가감정사 협회(SOFAA : The Society of Fine Art Auctioneers and Valuers)⁴⁷⁾

A. SOFAA 소개

SOFAA는 미술품 경매사 및 시가감정사들이 미술품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가능한 한 가장 신뢰할 만한 실거래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들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197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SOFAA에는 영국 전역에 걸쳐 골동품, 미술품, 보석, 가구 등을 취급하는 많은 경매사 또는 시가감정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B. SOFAA의 시가감정

SOFAA는 매매목적의 감정보다는 보험, 상속세 산정, 가족재산의 분리, 소득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감정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감정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다. SOFAA의 경우 보험목적의 시가감정이 가장 많이 의뢰된다고 한다.

(2) 영국의 감정사(expert, valuer)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술품감정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 자격요건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다년간 미술품전문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능력이 인정받은 경우에 감정사로 활동할 뿐이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국의 감정사에 대한 정확한 소개는 어렵다. 단지 개괄적으로 영국의 감정사 현황과 감정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본다.

47) 이하 SOFAA라 칭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SOFAA Home page(www.sofaa.org)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 영국의 감정사 현황

감정사는 크게 진위감정사(expert)와 시가감정사(valuer)로 구분되는데, 진위감정사와 시가감정사의 자격이나 요건상의 구별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 모두 미술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과학적·인지적 감정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진위감정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진위감정사로, 미술시장의 경제적 분석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시가감정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시가감정사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영국의 경우 미술품 전문거래에 있어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정사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나 전체 감정사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주요 감정전문 단체에 소속된 감정사들의 수를 파악한 자료⁴⁸⁾에 따르면 대략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영국의 감정교육기관

영국에서 미술품감정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학과 경매회사를 들 수 있다. 대학은 감정사를 직접 교육하기 보다는 감정사가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관련 분야인 미술사, 고고학, 미술품 보존 또는 복원에 관한 교육을 주로 담당한다. 이에 비해 경매회사는 자체의 교육제도를 통해 미술품감정의 실무와 지식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한다. 따라서 영국의 전문가에 의하면,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미술품 감정회사나 경매회사에서 근무경력을 쌓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⁴⁹⁾ 영국의 주요 감정교육기관을 대학과 경매회사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본다.

48) 최병식(연구책임자), 한국 미술품감정 증장기 진흥방안, 181-183면 참조.

49) Colin Sheaff(Bonhams London, Director of Asian Art Department) 현지 인터뷰, 2006년 8월, 최우석, 최병식(연구책임자), 전게서, 204면 재인용.

2-1) 감정관련 학과가 설치된 주요대학

A. 런던 커털드 미술연구소(Courtauld Institute of Art in London) :

- 미술사(History of Art) 학사, 석사, 박사과정 설치
- 회화 보존(Painting Conservation) 석사, 박사과정 설치
- 박물관 학예(Curating the Art Museum) 석사과정 설치

B. 킹스톤 대학교(Kingston University) :

- 미술시장 감정(Art Market Appraisal) 석사과정 설치
- 직업실무(Professional Practice) 과정 설치

C. 맨체스터 대학교의 미술대학(School of Arts, University of Manchester) :

- 고고학(Archeology) 학사, 석사, 박사과정 설치
- 미술사(History of Art) 학사, 석사과정 설치

D. 바스포드 홀 대학(Basford Hall College) :

- 가구 재생과 복원(Furniture Reproduction and Restoration)

E. 런던 미술학교(City & Guild of London Art School) :

- 복원 및 보존 연구(Restoration and Conservation Studies)

F. 캠브리지 대학교의 해밀턴 케르 연구소(Hamilton Kerr Institute, University of Cambridge) :

- 이젤회화 보존(Conservation of Easel Paintings)

G. 게테스헤드 기술대학의 보존학교(School of Conservation, Gateshead Technical College) :

- 파인 아트 보존(Conservation of Fine Art(Easel Paintings & Works of Art on Paper)) 석사과정 설치

H. 두람 대학교의 고고학부(Department of Archeology, University of Durham) :

- 역사물 보존(Conservation of Historical Objects) 석사과정 설치⁵⁰⁾

2-2) 경매회사에서의 감정교육

A. Sothebys의 Institute of Art⁵¹⁾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Sothebys의 ‘Institute of Art’(예술연구소)는 국제미술시장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직업훈련 및 이론 강의를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고, 학위는 맨체스터 대학에서 수여된다.

이 연구소의 프로그램은 현재 런던과 뉴욕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다.

런던에서는 ‘미술거래’(Art Business),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조형 및 장식미술’(Fine & Decorative Art), ‘사진’(Photography), ‘동아시아미술과 현대디자인’(East Asian Art and Contemporary Design) 등 모두 6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기별 프로그램(One-semester programmes)과 하기수업과정(Summer Study courses)도 마련되어 있고, 야간반(Evening classes)과 1일 특강(one-day events) 그리고 Art Fair Courses도 진행된다.

뉴욕에서는 ‘미술거래’(Art Business), ‘현대미술과 미국의 조형 및 장식미술’(Contemporary Art and American Fine & Decorative Art) 등 두 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기수업과정과 야간반 그리고 1일 특강이 마련되어 있다.

50) 이밖에도 Lincolnsjire College of Art & Design, University of Wales, West Dean College 등 여러 대학이 고가구, 공예가구, 고고학 등에 관한 복원 및 보존 과정을 두고 있다.

51) <http://www.sothebysinstitute.com> 참조.

싱가포르에서는 ‘미술거래와 현대미술’(Art Business and Contemporary Art)라는 하나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과정(Short courses)과 여행프로그램(Travel programmes)이 마련되어 있다.

B. Christie’s Education⁵²⁾

Christie’s Education은 글래스고우 대학(University of Glasgow)과 연계하여 석사 및 학사과정 프로그램을 런던과 뉴욕에서 진행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중국미술에서 초기 유럽미술, 근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 교육기관과 차별하여 유일하게 ‘예술과 스타일 그리고 디자인’(Art, Style and Design)⁵³⁾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근대미술’(Modern Art), ‘鑑識眼目과 미술시장의 역사’(Connoisseurship and History of Art Market), ‘민속미술연구’(Folk Art Studies)라는 3개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2. 프랑스의 감정제도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미술품 감정제도는 영국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진위감정이나 시가감정과 관련하여, 영국은 Oxford Authentication, BADA, LAPADA, Christie’s, Sothebys 등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은 단체나 경매회사들이 자체 감정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한 편인데;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영역으로 전문화된 감정사들의 단체가 많이 있으나, 이들 단체는 단지 소속 감정사들의 개인적 활동이나 정보교환 또는 기타 기준마련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실질적인 감정은 감정사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52) <http://www.christieseducation.com> 참조.

53) 이는 르네상스에서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모든 미술양식과 디자인을 강의하는 석사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둘째, 영국에서는 감정사들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감정사 인증제를 통해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와 비인증감정사(experts non agréés)를 구별하여 활동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우 감정사와 경매사의 자격상의 구별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연수를 거쳐야 한다.

우선 프랑스의 주요 감정관련 단체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감정사 및 경매사제도와 감정관련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1) 프랑스의 감정관련 단체

1) 전국 감정사 협회(CNE : Compagnie Nationale des Experts)⁵⁴⁾

CNE는 1971년에 주로 서적, 골동품, 그림, 희귀품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감정사들에 의해 창립되었고, 현재 총 146명의 감정사들이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CNE는 우수한 감정사들을 결함하여, 이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감정상의 윤리규정을 부과시킴으로써, 미술품 감정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CNE는 회원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요구하는데, 단지 형식적 직업경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범죄기록도 없어야 한다.

둘째, 회원인 감정사에게 다음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

- 감정이 의뢰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제공할 것 ;
- 정직과 성실 그리고 공정하게 직업을 수행할 것 ;
- 전문가로서 부담해야 하는 민사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

54) www.cne-experts.com 참조. 이하 CNE라 칭한다.

- 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것 ;
- 수수료를 투명하게 할 것.

2) 프랑스전문감정사조합(SFEP : Syndicat français des experts professionnels en oeuvres d'art)⁵⁵⁾

이 단체는 2차 대전 종결 이후, 증가하는 미술품 거래를 고려한 감정사들이 정확한 감정의 수행과 공정한 수수료청구 및 책임과 신뢰가 있는 관계유지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SFEP은 미술품 감정에 관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적 단체이다. 현재 SFEP은 140명 이상의 회원 감정사들이 70여개 이상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은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 고등법원(Cour d'Appel) 등의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로 또는 세관의 배석심판관(assesseurs)으로 활동한다.

3) 예술품 및 수집품 전문 감정사 전국 협의회(CNES : Chambre Nationale des Experts Spécialisés en Objets d'Arts et de Collection)⁵⁶⁾

CNES는 예술품 및 수집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감정사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신뢰받고 전문적인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67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현재 160여명의 소속감정사들이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특징은, 다른 프랑스의 감정사 단체들과는 달리, 자체적인 연수체계를 마련하여 연수생들을 교육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 각 지역에 설치된 소속감정사들의 지소를 통해 정기적인 감정연구교육을 실시하고, 연수생들(stagiaires)에게 일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전문 감정사를 배출하는 제도이다.⁵⁷⁾ 현재 CNES에

55) <http://www.sfep-experts.com> 참조. 이하 SFEP이라 칭한다.

56) <http://www.expertscnes.fr> 참조. 이하 CNES라 칭한다.

57) 물론 이 제도는 공인된 것이 아니며, CNES의 사적인 자격부여에 불과하다.

소속된 전문감정사에 연수생들을 포함하면, CNES는 약 2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연수교육은 현재 2003년 설치된 ‘CNES 연구소’(Institut CNES)에서 담당하고 있다. ‘CNES 연구소’는 법조인, 박물관관리인(conservateurs de musées), 언론인, 대학교수, 미술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comité pédagogique)에 의해 운영되며, 이 교육위원회는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수교육⁵⁸⁾은 기초단계인 입문연수생(préstagiaires)⁵⁹⁾과정과 정식단계인 연수생(stagiaires)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입문연수생은 계획된 프로그램교육을 마친 후에 CNES가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정식 연수생이 된다.

정식 연수생은, 계획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CNES가 개최하는 전국 또는 지역 규모의 세미나 전시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연수기간이 끝나면 CNES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만이 CNES의 소속감정사가 될 수 있다.

CNES의 소속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범죄경력 없이 10년⁶⁰⁾ 이상의 미술시장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⁶¹⁾

58) 교육기간은 위의 Home page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회 교육이 통상 2일 동안 진행되며, 이러한 교육이 1년에 여러 번 실시된다고 한다.

59) 입문연수생이 되기 위해서는 CNES 연구소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문연수생은 이들 지원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발된다.

60) 그러나 미술시장에 관련된 학과에서 대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면 7년의 직업경력으로 CNES 소속감정사에 지원할 수 있다.

61) CNES는 위에 언급한 CNE, SFEP와 함께 1988년에 ‘미술품감정사유럽연맹’(CEDEA : La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Experts d’Art)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4) “미술품전문감정사전국연맹”(FNEPSA : La Fédération Nationale d’Experts Professionnels Spécialisés en Art)⁶²⁾

FNEPSA는 공식적인 자격요건이 없으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미술품 감정상의 여러 폐단을 막고 미술품감정의 권위 및 공적신뢰의 유지를 위해 프랑스의 전문감정사(experts professionnels)들에 의해 1987년에 설립되었다.

미술시장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FNEPSA는 파리 본부에 회장(Président National)과 총무(Secrétaire National) 및 회계(Trésorier National)를 두고, 프랑스를 모두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지역대표자(Délégué Régions)를 두고 있다.

FNEPSA의 주요활동은 의뢰된 미술품의 감정안내 및 자료수집, 공공기관 및 사적 단체의 미술품감정 협조, 골동품 및 예술품 자료의 발간, 감정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심포지엄의 개최 등이다.

FNEPSA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정사의 가입을 허락하기 때문에, FNEPSA 소속 감정사들은 법원이나 세관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으며, 의뢰된 작품의 감정인증서(Certificats d’Authenticité) 발급 시에 FNEPSA공인 인증서를 사용한다. 그밖에 경매사(commissaire-priseur)의 의뢰에 의한 경매물품의 감정평가도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⁶³⁾

62) 자세한 것은 www.fnepsa.fr 참조. 이하 FNEPSA라 칭한다.

63) 이밖에 司法감정사들의 모임인 ‘예술품 사법감정사 협회’(Compagnie des experts judiciaires d’art : www.experts-arts.com), 보험사들로부터 인증 받은 감정사들의 모임인 ‘인증감정사협회’(Compagnie des experts agréés : www.expert-cea.fr) 등이 있으나, 이들의 기능은 다른 단체들과 큰 차이가 없다.

(2) 프랑스의 감정사(expert)와 경매사(commissaire-priseur)

1) 전문감정사(experts professionnels)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전문감정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 자격요건은 없다. 즉 미술품 감정사는 학위보다는 실제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미술사 또는 고고학을 전공했거나, 장식미술(arts décoratifs), 조형미술(arts plastiques), 응용미술(arts appliqués), 또는 전통공예(artisanats)와 관련된 학업을 이수하고 각 전문분야에서 다년간의 직업적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쌓아야 만이 전문감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는 공공기관에 의한 감정사 인증제가 있다. 이 인증제는 전문감정사로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은 아니다. 즉 이 인증제는 해당 기관에서 감정에 관한 사무가 발생 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감정사들을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등록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등록’의 의미는 공공기관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증 받은 감정사는 인증 받지 못한 감정사들에 비해 대외적인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인증감정사는 크게 사법기관에 의해 인증 받은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⁶⁴와 최근 2000년 법률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동산 임의경매 심의회’(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에 의해 인증 받은 ‘심의회 인가 감정사’(experts agréés par le Conseil)가 있다.

64) 이러한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외에, 세관의 심사물품의 감정을 담당하는 ‘세관 소속 감정사’(experts assessesurs près les commissions douanières)도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속이기는 하나 사법감정사와는 구별된다. 이들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A.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⁶⁵⁾

사법감정사란 프랑스의 대법원(Cour de cassation)이나 고등법원(Cour d'Appel), 등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법원에 등록된 감정사를 말한다. 대법원에 등록된 감정사를 ‘대법원 인증 감정사’(experts agréés par la Cour de cassation)라 칭하고, 고등법원에 등록된 감정사를 ‘X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experts près de la Cour d'Appel de X)라 칭한다.

사법감정사⁶⁶⁾가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원의 사무소에 지원 서류를⁶⁷⁾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원은 이 서류들을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법원등록부에 지원자의 이름을 올리면, 이 지원자는 ‘사법감정사’가 된다. 사법감정사로 인정되면, 해당자는 관련 규칙⁶⁸⁾을 엄수할 것을 선서(serment)해야 한다. 사법감정사에 관한 2004년 12월 23일 데크레⁶⁹⁾에 의하면, 사법감정사는 70세 미만으로 한정된다. 또한 법인(personnes morales)도 사법감정사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의 책임자가 선서를 해야 한다. 처음으로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로 등록된 감정인은 우선 2년의 감독기간(période probatoire)⁷⁰⁾을 거친 후 재등록

65) <http://www.metiers.justice.gouv.fr> 참조. 사법감정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발표하기로 한다.

66) 사법감정사의 범위는 의학, 건축, 경제, 재정, 보석감정, 미술품감정 등 매우 다양하다.

67) 즉 대법원이나 각 지역 고등법원의 사무소에 전문분야를 명시한 지원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68) ‘대법원 인증 감정인’은 ‘대법원 인증 감정사 협회’(Copmpagnie des experts agréés par la Cour de cassation)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협회의 내부규칙(règlement intérieur, 1989년 1월 23일 채택)과 윤리규칙을 소속감정인은 준수해야 한다. 그밖에 각 지역의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들도, 지역마다 협회를 결성하고 있고, 이들도 소속협회의 내부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감정사는 회원자격 및 지위를 박탈당한다.

69) Le Décret n° 2004-1463, 23 déc. 2004 (JO 30 déc. 2004). 데크레(Décret)란 우리법과 비교하면 명령에 해당한다. 주로 행정심의 및 명령을 관할하는 국사원(Conseil d'Etat)에 의해 행해진다.

70) 이 기간 동안 해당 감정사는 사법감정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되, 2년 후에 반드시 심사를 요하는 재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등록이 인정되면, 해당감정사는 5년의 기간이 부여된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가 된다. 따라서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사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한 활동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재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⁷¹⁾

‘대법원 인증 감정사’가 가장 그 권위를 인정받는데, 대법원 인증 감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 인정받은 감정사는 7년의 기간이 부여된 ‘대법원 인증 감정사’가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속 감정인이 관련규칙을 엄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한다.⁷²⁾

B.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 par le 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

‘심의회인증감정사’란 2000년 7월 10일 법률⁷³⁾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동산임의경매심의회’(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에 의해 인증 받은 감정사를 말한다. 이 법률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회원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선언한 로마조약에 부응하고, 이로 인한 회원국 경매중사전문가들 간의 경쟁에서 프랑스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경매에 관한 상법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⁷⁴⁾ 즉 이전의 프랑스 경

71)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 산업재산권위원회 위원(conseils en propriétés industrielle), 경매전문감정사(experts en ventes aux enchères publiques) 등의 사법직업인의 지위변경에 관한 법률인 ‘2004년 2월 11일 2004-130 법률’(Loi n° 2004-130 du 11 février 2004 réformant le statut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ou juridiques, des experts judiciaires,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et des experts en ventes aux enchères publiques) 제47조 II 참조.

72) 위 법률 제47조 III 참조.

73)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경매에서의 동산의 임의경매에 관한 2000년 7월 10일 법률 제2000-642호”(Loi n° 2000-642 du 10 juillet portant réglementation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이다.

74) 자세한 것은 ‘www.senat.fr/leg/PJL555.html 참조.

매시장에서는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경매사(commisaires-priseurs)만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외국의 경매 회사도 프랑스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률은 ‘동산임의경매심의회’(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를 설립하여 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즉 이 심의회는 경매전문회사와 경매에 참여하는 감정사를 인가(agrément)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 인가받은 회사나 감정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⁷⁵⁾

따라서 이 법률의 시행 이후, 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사들은 이 심의회의 인가를 받으면 동산경매에서의 감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Expert agréé par le 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 aux enchères publiques)라는 자격을 얻게 된다.⁷⁶⁾

이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제를 마련한 이유로는 일반적인 감정사들의 객관화된 자격요건이나 법적 통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미술품이나 골동품 또는 기타 동산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모두 감정인이라 자칭하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의 견해를 신뢰하고 매매를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사법감정사’는, 그 수가 비교적 적음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다양한 감정요구에 효율적으로 응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동산경매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들(commisaires-priseurs)이 물건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법감정사에게 의뢰할 것이라 여겨지지

75) 이 법률은 현행 프랑스 상법전(Code de commerce)에 삽입되었는데, 심의회는 권한은 프랑스 상법전 L321-18조에 규정되어 있다.

76) 동산경매의 감정업무를 취급하느냐 여부는 감정사의 자유로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위 심의회 인가 없이도, 감정사들은 동산경매 이외의 감정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즉 동산경매사가 동산경매의 감정업무를 취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산경매심의회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감정업무만을 취급하기로 한다면, 심의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단순한 상인에 불과한 자에게 물건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⁷⁷⁾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동산임의경매심의회’⁷⁸⁾에 의한 동산전문 감정사의 인가제를 통해, 이들에게 동산경매물건의 감정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산경매시장에서의 물품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감정사들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산 전문감정사가 심의회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을 명시한 지원서,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⁷⁹⁾

2) 경매사(commisnaire-priseur)⁸⁰⁾

프랑스 경매제도는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경매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파리는 세계미술시장의 7%를 차지하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프랑스 경매제도의 특징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통해 경매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A. 경매사(commisnaire-priseur)의 자격

프랑스는 경매사를 꼬미쉴르-프리쉴르(commisnaire-priseur)라 칭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술사 및 관련법률 과목들로 구성된 국가의 공식인 증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77) E. Lhermitte, “De l’agrément des Experts par le nouveau conseil de vente : Loi du 10 juillet 2000”, www.argusbibliophile.com/agrement-experts.htm 참조.

78) 이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프랑스 상법전 L321-21조 참조.

79) 2001년 7월 19일 테크레(Décret 2001-650 du 19 juillet 2001, J.O. 21 juillet 2001) 제55조 이하. 이 테크레는 ‘동산임의경매심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www.conseildesventes.com 참조.

80) 자세한 것은, www.commissaires-priseurs.com ; 이에 관한 한국의 논문은, 최병식, “한국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경매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 문화경제연구, 제5권 2호, 2002년 12월 참조.

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학과 미술 관련학(예술사, 고고학, 응용미술, 조형미술 등) 2개의 대학자격증을 취득하거나,⁸¹⁾ 경매회사 또는 경매사무소에서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경매관련 연수교육(stage)에 참여하기 위한 시험에 응해야 한다.⁸²⁾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의 유급 연수과정⁸³⁾을 거친 후 수료증(certificat de bon accomplissement du stage)을 발급받는다. 이 수료증과 더불어 최종의 자격시험(examen d'aptitude)⁸⁴⁾을 합격하면 공인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러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경매사(commissaire-priseur)는 경매 물품의 가격과 진본성, 경매진행과정의 보증인이며, 가치평가와 분류, 보험계약 등을 동시에 행하는 공적인 대리인이자 관리인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프랑스 경매사제도는 공인경매사의 지위를 2개로 나누어, '司法경매'(ventes judiciaires)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매사'(commissaire-priseur judiciaire)와 '임의경매'(ventes volontaires)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경매사'(commissaire-priseur)로 구분하고 있다.⁸⁵⁾ 즉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00년 7월 10일 법률⁸⁶⁾에 의해, 일반 사경매인 임의경매는 반드시 '경매회사'(société de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

81) 법학과 미술 관련학 중, 하나는 학사(licence)학위를 가져야 하고 나머지는 2년 이상의 수료(DEUG)만 하면 된다.

82) 1차로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2차로 구두시험을 통과해야 경매사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시험은 1년에 1회 행해지며, 지원자는 3회까지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3) '동산임의경매심의회'의 발족 이후, 이 경매사 연수교육은 '사법경매사전국협의회(La chambre nationale des commissaires-priseurs judiciaires)와의 협력 하에 '동산임의경매심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84) 각 30분씩 3과목(법률, 직업관련규정, 매매실무)의 구두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85) 이는 2000년 7월 10일 법률에 의한 것인데, 이전에는 경매사(commissaires-priseurs)가 사법경매와 임의경매 업무를 구분 없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노동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경매회사가 프랑스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86) Loi n° 2000-642 du 10 juillet 2000 portant réglementation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

ères publiques)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이 경매회사에 소속된 일반 경매사가 임의경매를 실제로 진행시키는데 반해⁸⁷⁾, 강제경매인 ‘司法경매’는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司法경매사’(commissaire-priseur judiciaire)만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司法경매사’는 법무공무원 신분이 된다.

프랑스 경매제도의 특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별 활동제도이다. 프랑스 사법경매사들의 단체인 ‘사법경매사전국협의회’(La chambre nationale des commissaires-priseurs judiciaires)은 크게 파리와 지방으로 나뉘며, 리용, 노르망디 등 지역의 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경매사는 파리에만 110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에 의해 설립된 경매사무소(Etude)는 파리에 60여개 소가 있고, Etude는 전국적으로 330개소에 달한다.

B. 경매사(commissaires-priseurs)와 미술품감정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경매사는 해박한 미술관련지식을 바탕으로 현상에서의 감정평가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더불어 자신의 전문역역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경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술품전문 감정사의 공식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경매사도 미술품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술품감정에 있어서 경매사가 一般醫에 해당한다면 전문감정사(experts professionnels)는 專門醫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물품의 진위여부는 물론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사는 경매물품 감정에 있어 관련분야의 전문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하게 된다. 즉 경매사는 자신이 신뢰하는 감정사와 협력하여 경매물품의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87) 동법률 제2조, 현행 프랑스 상법전 L321-2조. 경매회사는 “동산임의경매심의회”(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다.(현 프랑스 상법전 L321-18조 이하 참조) 그리고 외국의 경매회사도 위 심의회의 인가를 거쳐 프랑스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경매사와 감정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⁸⁸⁾ 물론 2000년 7월 10일 법률의 공포 이후, 경매사는 ‘동산임의경매심의회’의 인가를 받은 감정사에게만 경매물품의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3) 프랑스의 감정관련 교육기관

오랜 문화적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많은 국립대학들이 ‘예술사 및 고고학과’를 두고 학사(Licence) 및 석사(Master) 그리고 박사(Doctorat) 과정에 이르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의 ‘에콜 루브르’(Ecole du Louvre)는 고미술품의 복원과 보존에 관한 교육으로 유명하다. 그밖에 미술품 경매와 감정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사립학교가 있다. 이들 중 몇몇 주요 교육기관을 소개한다.

A. 파리 제4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V)

- 고고학 및 미술사(Archéologie et histoire de l’art) : 학사, 석사, 박사과정 설치.
-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소(Institut d’archéologie et d’histoire de l’art) 설치

B. 파리 제10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X)

- 미술사 및 고고학(Histoire de l’art et archéologie) : 학사, 석사, 박사과정 설치.

88) 프랑스 상법전 L321-31조 제2항 : “① 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정사는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모든 감정사는 자신의 활동이 연계된 매매의 조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Code de commerce, Article L321-31 : “Tout expert, qu’il soit ou non agréé, est tenu de contracter une assurance garantissant sa responsabilité professionnelle. Il est solidairement responsable avec l’organisateur de la vente pour ce qui relève de son activité. □□

C.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 미술사 및 고고학(Histoire de l'art et archéologie) : 학사, 석사과정 설치.⁸⁹⁾

D. 에콜 루브르(Ecole du Louvre)⁹⁰⁾

고미술품에 관한 교육은 ‘에콜 루브르’(Ecole du Louvre)가 유명하다. 1882년에 설립된 Ecole du Louvre는 루브르박물관과의 연결체계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규모의 다양한 소장품을 직접 관찰하면서 강의 및 연구가 진행될 뿐 아니라, 루브르박물관에 의해 편찬되는 DB자료들의 활용과 풍부한 경험의 교수진구성, 복원 및 보존에 관한 첨단과학시설 등은 여러 단계의 미술품 복원과 보존을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교육과정은 크게, 정규과정, 청강과정, 직업연수과정으로 나뉜다.

a) 정규과정 :

- 1기(premier cycle)⁹¹⁾, 2기(deuxième cycle)⁹²⁾, 3기(troisième cycle)⁹³⁾의 단계별 교육을 실시. 각 기는 2년의 기간으로 수업을 진행
- 각 시대별 및 국가별로 세분화된 미술사 강좌, 건축학, 박물관학, 미술품수집의 역사, 미술품의 관리, 미술품 보존 및 복원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겸한 프로그램이 설치.

b) 청강과정

- 일반미술사 및 고고학 강좌(3년간 진행)
- 전문 강좌 : 시대, 지역, 기술 등으로 세분화된 주제별로 강의 진행. 주제는 매년 새로이 결정됨.

89) 이밖에 투르 대학교(Université de Tours), 디종 대학교(Université de Dijon), 스트라스부르그 대학교(Université de Strasbourg) 등 많은 국립대학들이 ‘미술사 및 고고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90) www.ecoledulouvre.fr 참조.

91) 일반대학의 학사과정에 해당.

92) 일반대학의 석사과정에 해당.

93) 일반대학의 박사수업과정에 해당.

c) 직업연구과정

‘동산임의경매심의회’ 및 ‘전국사법경매사협회’(Chambre nationale des commissaires-priseurs judiciaires)와 협력하여 매 2년마다 이론과 실습을 겸한 5주간의 경매사 연수교육을 실시.

E. 고등미술연구소(IESA : Institut d’Etudes Supérieures des Arts)⁹⁴⁾

1985년에 설립된 IESA는 1998년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에 의해 인정된 사립 직업교육기관이다.

- 미술품 경매와 감정, 문화행사, 통신(Communication)과 멀티미디어 (Multimedia)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 3년의 1기(premier cycle), 2년의 2기(deuxième cycle), 1년의 3기 (troisième cycle) 과정으로 한 단계별 수업 진행

F. 예술 및 문화활동 상업학교(ICART : L’école du commerce de l’art et de l’action culturelle)⁹⁵⁾

ICART는 1963년에 설립되었고 2007년 프랑스 문화통신부에 의해 인정된 예술활동 및 미술시장에 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립 교육 기관이다.

- 미술관 운영, 전시회개최, 경매 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 3년 기간의 이론과 실습을 겸한 수업을 진행.⁹⁶⁾

94) www.iesa.fr 참조. 이하 IESA라 칭한다.

95) www.icartparis.com 참조. 이하 ICART라 칭한다.

96) 이밖에 문화직업학교(Ecole des Métiers de la Culture ; www.groupeeac.com), 마리 스 엘로아 미술학교(Ecole d’Art Maryse Eloy ; www.ecole-maryse-eloy.com) 등의 미술품 매매나 경매에 관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가 있다.

제 2 절 미술품 거래에서의 진본성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술품 감정사의 자격이나 요건에 관한 공식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른 미술품 종류의 다양성과 수많은 작가들의 고유한 제작기법이나 표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 불가능하리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감정사라 할지라도, 그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감정상의 착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술품 가치평가(진위 감정과 시가감정)의 상대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감정사, 경매사,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서 미술품의 감정결과 내지는 진위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

미술품거래에 있어서 미술품 가치평가의 상대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러한 위험은 매도인 또는 경매사 그리고 감정사와 매수인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즉 이는 미술품 진위감정결과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직업적인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진위여부에 대해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⁹⁷⁾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법적 대응을 살펴본다. 우선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의 법리는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며, 그리고 이것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본다.

97) 정책적인 면에서도,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이들은 적극적인 감정행위 내지는 계약적 보증행위를 꺼리게 되어 미술품 거래가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이들의 면책범위를 넓히면 불성실한 감정행위나 보증행위가 조장되어 미술품거래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1. 영국의 법적 대응

(1)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법적 책임

일반적으로 아무런 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단순한 의견이나 견해를 표명한 자에 대해 표명된 견해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견이나 견해의 표시가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법적 효과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견해의 표시자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앞의 영국의 미술품 감정기관에 관한 소개된 바 있는 대영박물관의 일반대중을 위한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의 경우, 박물관의 전문가가 의뢰품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내용이 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해당 전문가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견해의 표명(statement)에 앞서, 박물관은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또 ‘Object identification’이 대중에 대한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ADA의 고미술품 평가 서비스(Antiques Assessment Service)는 유료 서비스이고, 따라서 이는 일종의 계약이며, 그 평가결과가 서면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비록 BADA가 평가결과의 ‘완전한 정확성’(complete accuracy)에 대해 어떠한 보장(any warranty)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⁹⁸⁾ 서면으로 작성된 평가내용이 후에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고, 이러한 착오가 감정사들의 신의칙(good faith)에 입각하지 않은 감정서의 작성이나 평가과정에서의 적절한 성의(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면, BADA는 그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98) www.bada.org/index.pl?id=2204 참조.

기본적으로 감정의뢰인과 감정사와의 법률관계는 계약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감정사 또는 경매인의 책임법리도 계약에서 찾아야 한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계약책임의 기본 법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계약상의 내용(terms of contract)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즉 계약상의 내용을 토대로, 일방 당사자가 특정채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그 불이행의 결과에 대해 그 당사자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의 공급을 반드시 일정한 시점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면, 그 이행지체의 결과가 채무자의 과실이 아닌 예견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채무자는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정한 시점까지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best endeavors)이라든가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ndeavors)을 다하겠다는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국법이 계약상의 이러한 엄격책임을 채무자의 명시적인 보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명시적 담보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도인은 계약의 목적에 ‘만족스러운 품질’(satisfactory quality)의 물품을 제공한다는 ‘묵시적인 내용’(implied terms)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영국의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제14조 (2)⁹⁹⁾는 규정하고 있다.

99) 14. (2)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there is an implied term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of satisfactory quality.”

‘만족스러운 품질’의 기준에 대해서는 본 조 이하에 밝히고 있다. 즉 (2A)는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가격이나 물품에 대한 설명 기타 상황에 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만족스러운 품질”이라고 한다. (2A)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if they meet the standar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regard as satisfactory, taking account of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price (if relevant) and

그러나 영국에서의 계약위반책임이 항상 이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송계약이나 서비스계약의 경우, 계약책임은 엄격책임이 아닌 과실책임(fault liability)에 기초하고 있다. 즉 영국의 1982년 ‘물품 및 서비스 제공법’(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제13조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에는, (...) 서비스제공자는 ‘합리적인 주의와 능력’(reasonable care and skill)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묵시적인 내용’(implied term)이 포함되어 있다.”¹⁰⁰⁾고 규정하고 있다.¹⁰¹⁾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에게 계약위반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인 주의와 능력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국의 계약법에서 미술품 감정사의 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과 미술품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감정사와 경매사 그리고 매도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인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s)을 알아본 후에, 감정사와 매도인의 계약에 기초한 법적 책임을 각각 살피기로 한다.

a)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s) 책임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s)이란, 거래 또는 업무 중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에 관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설명’(false descriptions)을 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거래상 허위설명’ 책임은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s Act 1968)의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동법은 제

all the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100) 13 “In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a service where the supplier is acting in the course of a business, there is an implied term that the supplier will carry out the service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

101) E. Mckendrick, Contract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 Oxford Univ. press, 2004, pp. 919-920 참조.

1조에 ‘거래상 허위설명의 금지’(prohibition of false trade descriptions)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guilty of offence)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²⁾ 그리고 제2조에 거래상의 설명(trade descriptions)이란 거래에 관련된 물품에 관한 「수량, 크기, 제조방법, 구성, 제조자, 역사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직·간접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고 있다.¹⁰³⁾ 즉 이러한 물품에 관한 특성을 잘못 이해하도록 하는 ‘거래상의 설명’은 ‘거래상의 허위설명’에 해당하게 된다.¹⁰⁴⁾

따라서 미술품의 감정사나 경매사 또는 매도인이 해당 미술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감정서나 카탈로그에 표시한 경우, 허위설명금지 위반으로 형사상의 처벌¹⁰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2) 1. Prohibition of false trade descriptions.— “(1) Any person who, in the course of a trade or business, —

(a) applies a false trade description to any goods; or

(b) supplies or offers to supply any goods to which a false trade description is applied;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be guilty of an offence.□□

103) 2. Trade description.— “(1) A trade description is an indication, direct or indirect, and by whatever means given,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any goods or parts of goods, that is to say—

(a) quantity, size or gauge;

(b) method of manufacture, production, processing or reconditioning;

(c) composition;

(d) fitness for purpose, strength, performance, behaviour or accuracy;

(e) any physical characteristics not includ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f) testing by any person and results thereof;

(g) approval by any person or conformity with a type approved by any person;

(h) place or date of manufacture, production, processing or reconditioning;

(i) person by whom manufactured, produced, processed or reconditioned;

(j) other history, including previous ownership or use.□□

104) 동법 제3조. 3. False trade description.— “(1) A false trade description is a trade description which is false to a material degree.

(2) A trade description which, though not false, is misleading, that is to say, likely to be taken for such an indication of any of the matters specified in section 2 of this Act as would be false to a material degree,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105) 이 경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법 제18조. 18. Penalty for offences.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for which no other penalty is specified shall be liable—

그러나 이 책임은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무과실의 엄격책임은 아니다. 즉 위반자가 ‘허위설명금지’(prohibition of false descriptions)의 위반이 「(i) 착오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신뢰하여 또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건의 발생에서 비롯되었고, (ii)이러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면, 그는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게 된다.¹⁰⁶⁾ 즉 위반자는 ‘허위설명’이 자신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i), ‘허위설명’위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주의를 다하였음(ii)을 함께 입증해야 만이(2중의 입증) 면책된다.¹⁰⁷⁾

이 형사상 책임의 특색은, 일반 과실책임과는 달리, 입증책임을 위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반자는 위의 두 요건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업적인 미술품 감정사나 경매사 또는 매도인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감정서나 카탈로그의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래상 허위설명의 금지’(prohibition of false trade descriptions)의무의 기초가 되었던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s Act 1968)은 ‘불공정 상관습

(a)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four hundred pounds; and

(b)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or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both.□□

106) 24. Defence of mistake, accident, - “(1) In any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it shall, subject to subsection (2) of this section, be a defence for the person charged to prove -

(a)that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was due to a mistake or to reliance on information supplied to him or to the act or default of another person, an accident or some other cause beyond his control; and

(b)that he took all reasonable precautions and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avoid the commission of such an offence by himself or any person under his control.”

107) 물론 이러한 형사책임의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에 언급될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다.

에 관한 2005년 EC 지침'(Directive 2005/29/EC, The Unfair Commercial Directive)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지금은 '거래상 허위설명의 금지' 규정이 위 EC 지침의 영국 국내법 전환으로서 2008년 5월 8일에 제정되었고 동년 5월 26일에 발효된 '2008년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에 편입되었다.¹⁰⁸⁾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s Act 1968)과 동일하나, 1968년 법이 소비자와 전문직업인의 구별 없이 '거래상 설명'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2008년 규칙은 '거래상 설명'과 관련된 전문사업가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b) 감정사의 민사상 법적 책임

감정사의 민사책임인 계약위반에 적용되는 책임법리를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감정사와 의뢰인과의 계약은 「감정사가 의뢰품을 감정하여 진위여부, 제작연대, 작품상태, 시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의뢰인이 감정사에게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서비스계약이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결정은 의뢰품의 특성이나 의뢰인과 감정사와의 합의(agreement)에 의해서 결정된다.

108) 즉 '거래상 허위설명 금지'(prohibition of false trade descriptions)를 규정했던 1968년 법 제1조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대신에 2008년 규칙 제3조에 '불공정한 상관행의 금지'(prohibition of unfair commercial practices)라는 종합규정을 두고 ; 동조 (4)에 '잘못 인도하는 행위'(misleading action)도 불공정 상관행이며 ; 제5조에 '잘못 인도하는 행위'(misleading action)를 예시하면서, '허위의 정보'(false information)를 동조 (2)(a)에 규정함으로써 '거래상 허위설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이의 위반에 관한 처벌도 2008년 규칙 제13조에 규정하였는데 그 효력은 1968년 법률 제18조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동일하다. 그리고 위반자의 면책요건(2008년 규칙 제17조)도 1968년 법률 제24조와 동일하다. 2008년 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이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된 내용 중의 일부(예 : 제작시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감정사가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라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특정채무이행의 명시적 보장’위반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됨이 분명하다.

그러나 감정사가 의뢰인이 요청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정사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에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즉 의뢰인이 『감정사가 합리적인 주의와 능력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만이 감정사(서비스제공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합리적인 주의와 능력’(reasonable care and skill)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채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유사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자가 이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확한 이행, 즉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가이다.

따라서 물품의 감정의뢰계약의 경우, 감정평가서 상의 내용이 후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오류 내지는 착오 자체로 감정사에게 직접적인 계약위반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착오가 감정사들의 신의칙(good faith)에 입각하지 않은 감정서의 작성이나 평가과정에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감정사는 그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감정사의 계약위반법리를 이러한 과실책임에 기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술품의 가치평가는 상대성이라는 특성이자 한계를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⁹⁾ 그

109) 진본성(authenticity) 평가와 관련하여 현존 작가가 전시회를 통해 자기 작품의 판매를 한 경우에 진본성의 보장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본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작가가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진위감정의 결과는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러므로 감정사에게 의뢰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장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감정전문 단체는 감정결과가 감정평가결과의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¹¹⁰⁾

c) 미술품 매도인의 민사상 법적 책임

그러나 매매의 경우, 영국법의 입장은 보다 엄격하다. 매매에 적용되는 영국의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은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묵시적 보장책임(implied warranty)을 인정하고 있다.¹¹¹⁾ 즉 동법 제 11조 (3)은 “매매계약상에 있는 한 明記(stipulation)가 계약조건을 구성하는가와 상관없이, 그 명기의 위반은 계약의 [이행]이 부인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된 보장책임(warranty)을 야기할 수 있다. (...) [그 명기의 위반(breach of stipulation)에 대한 판단은]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경우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²⁾ 따라서 판매된 미술품이 감정서나 카탈로그에 표시된 내용과

110) 예를 들어, ‘영국 고미술 딜러 협회’(BADA)는 “모든 견해는 현재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정의와 노력(due diligence)을 기울여 수행된 조사와 검사 후에 신의칙(good faith)에 입각하여 부여된다. 그러나 감정 및 평가의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자주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에 표시된 견해의 완벽한 정확성’(the complete accuracy of any opinion expressed)을 BADA는 물론 평가단의 어느 전문가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고 ‘고미술품 평가 서비스’(Antiques Assessment Service)의 약관에 밝히고 있다.(<http://www.bada.org/index.pl?id=2204>) 참조.

111)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산매매법’ 제14조 (2)의 ‘만족스러운 품질’(satisfactory quality)의 물품을 제공한다는 ‘묵시적인 내용’(implied terms) 위반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제14조 (2)가 공급되는 물품의 일반적인 품질(quality)에 관한 것이라면, 미술품 경매에서의 경매물은 단일의 특정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 미술품경매에서 주로 문제되는 감정사의 법적 책임은 원용되는 감정서나 카탈로그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동산매매법 제11조(묵시적 담보책임) 내지는 제13조(설명에 의한 매매)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112) 11 (3) “Whether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 is a condition, the breach of which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or a warranty, the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매도인은 구체적 위반 사항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보장의무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더욱이 동법 제13조는 ‘설명에 의한 매매’(sale by descriptions)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1)에 의하면, “설명에 의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은 물품이 설명서와 일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³⁾ 따라서 설명(descriptions)에 해당하는 감정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나 카탈로그의 내용과 해당 미술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결국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과하는데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과실, 즉 잘못된 설명의 내용이 경매사의 주의의무위반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엄격책임에 해당한다. 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거나,¹¹⁴⁾ 매수인이 그룹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술품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부가된 보장책임위반(breach of warranty)이 될 것이다.(동법 제13조 (4))¹¹⁵⁾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경매회사는 약관에 진위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Sothebys의 약관¹¹⁶⁾을 예로 하면, 감정서에 작가, 시기, 경매물품의 원전 등이 명시된 것에 관하여 Sothebys는 이를 보증한다고 한다. 그

breach of which may give rise to a claim for damages (...), depends in each case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

113) 13 (1)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by description, there is an implied term that the goods will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114)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를 가질 뿐 아니라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115) 13 (4) “Subject to section 35A below where a contract of sale is not severable and the buyer has accepted the goods or part of them, the breach of a condition to be fulfilled by the seller can only be treated as a breach of warranty, and not as a ground for rejecting the goods and treating the contract as repudiated, unless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term of the contract to that effect.”

116) <http://pages.ebay.com/sothebys/help/rulesandsafety/guarantee.html> 참조.

리고 예술가나 창작자, 제작일,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은 설명서라면,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 카탈로그 상의 내용이 단순한 견해의 표시(statements of opinion)일 경우 ;
- 보증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적 또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한 부분 ;
- 보증서의 내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
- 보증서상의 내용이, 경매 시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거나 사용하기에 비실용적이며, 매도인의 입장에서, 해당 물품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물품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과학기술적 검사절차에 의해서만 그 오류가 증명될 경우.

그러나 보증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또는 경매된 물품이 위작(counterfeit)으로 드러난 경우, Sothebys는 매매를 취소하고 그 대금을 낙찰자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진본성문제에 관한 영국 법원의 입장

본 연구는 진본성 문제에 관한 영국의 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두 판결 모두 동산매매법 제13조의 ‘설명에 의한 매매’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동조항의 ‘설명’(description)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이다. 첫 번째 판결은 ‘설명에 의한 매매’규정의 적용이 부인된 사례이고, 두 번째 판결은 그 적용이 인정된 사례이다.

1) Harlingdon and Leinster Enterprises Ltd. v.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 [1985 L. 2051] ; [1990] 3 W.L.R. 13

A. 사건의 개요

런던에서 한 화랑(Christopher Hull Fine Art Ltd.)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Christopher Hull)는 1984년에 2점의 그림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 그림들은 1980년에 진행된 경매 카탈로그의 복사본에서 독일 표현주의 학파(expressionist school)의 한 작가인 가브리엘르 문터(Gabriele Münter)의 작품으로 소개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작품들은 후에 위작으로 밝혀진다.] 현대 영국의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는 독일 표현주의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을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작품들이 문터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Christies 경매회사에 작품을 문의하였고 Christies는 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카탈로그에 의한 확인과 Christies의 자문을 근거로 피고는 이들 작품의 문터의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피고는 한 지인의 추천을 통해 독일 작품들의 딜러로서 지명도가 있고 실제로 독일 표현주의 작품들의 매매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원고(Holger Braasch)의 회사(Harlingdon and Leinster Enterprises Ltd.)를 소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문터의 작품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카탈로그를 통해 확인하였고 Christies에 자문을 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즉시 관심을 표명하였고 1984년 11월에 원고회사의 직원인 Klaus Runkel을 피고에게 보낸다. 이미 전화로 모든 것을 얘기한 피고는 이 직원에게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반복하지도 않았다.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직원이 관련 작품들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직원에게 본인이 독일 작품의 전문가도 아니고 문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것을 Runkel의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원고인 Braasch나 직원인 Runkel도 독일 표현주의 작품의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나 교육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unkel은 관련 작품들을 검사하였고, Runkel은 검사과정에서 이 작품들이 문터의 것이 아니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Runkel이 살펴본 경매 카탈로그의 사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 “ - Upper Bavaria 22000에 있는 마을 거리
- 마분지 위의 유화 39 x 48 cm.
- 왼쪽 하단에 작가의 모노그램 MÜ가 찍혀 있음.
- 안마당을 둘러싼 커다란 벽을 따라 거리가 가파르게 배경으로 향하여 있음. 3명의 여인들이 각각 보도에 있음. 오른쪽에서 따뜻한 햇볕이 내리고 있음.”

Runkel은 작품들의 출처에 대해 전혀 문의하지 않았고 이후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수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Runkel도 피고도 이들 작품이 문터가 제작한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표명하지 않았고 거래는 6000 파운드라는 가격으로 성사되었는데, 단 이에는, “이 거래는 재매매(resale)를 위한 것이며, 만약 원고가 새 구매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들 작품은 피고에게 반환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두 작품은 1984년 12월 1일에 원고의 주소지에 인도되었고, 12월 3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매자를 찾았으며 이 구매자에게 보낼 송장(invoice)을 작성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구매자는 1985년 2월에 독일 뮌헨(Munich)에 있는 가브리엘르 문터(Gabriele Münter)의 총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Stiftung)에 관련 작품의 보내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2월 26일에 이 재단의 이

사는 2명의 감정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작품이 가짜임을 밝혔다. 이 감정서와 함께 구매자는 작품을 원고에게 돌려보냈고 구매대금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해당 작품을 찾아가고 600파운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B.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1979년 동산매매법’(Sales of Goods Act 1979) 제13조에 규정된 ‘설명에 의한 동산매매계약’(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by descriptions)에 해당하고, 동조 (1)에 명시된 대로 「작품은 설명과 일치할 것」이라는 ‘묵시적 계약내용’(implied terms)¹¹⁷⁾을 피고는 위반하였다.」

즉 매도인(피고)은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데 동의하였고, 매수인(원고)도 바로 그 작가의 작품을 매수하는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작가의 신원이 이 거래에 관한 설명(description)의 일부라는 점을 결론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거래과정 전체에서 중점을 둔 것은 카탈로그사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작품은 문터의 것이라는 점에 양 당사자 모두가 이해한다는 것이고, 또 이점은 송장에 명백히 밝히고 있어, 작가의 신원은 설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거래는 동산매매법 제13조의 ‘설명에 의한 매매’라는 것이다.

C. 피고의 주장내용

피고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설명에 의한 매매’에서 함축된 것은 설명(descriptions)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인데, 이번 상황은 이러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본질적인

117) “13. Sale by description :

(1)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by description, there is an implied term that the goods will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1A) As regards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 term implied by subsection (1) above is a condition.□□

것은 매수인(원고)의 대리인은, 다른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해당 작품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문터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검사를 바탕으로 하여 문터의 작품으로 믿으면서 해당 작품을 구입한 것이다. 사실 매수인의 대리인은 원작성(authorship)에 대한 일종의 위험을 택하였고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는 1979년 동산매매법 제13조 (1)의 ‘설명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3조 (1)의 문구가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법적 관점에서 거래가 ‘설명에 의한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설명에 의거해야 한다. 즉 매도인이 주장한 설명과 매매계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매도인의 설명이 단지 문제된 사항에 매수인을 이끈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불충분한 것이다.』

D. 판결내용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와 원고의 대리인 둘 다 모두 문제된 그림이 문터의 작품이라고 믿었다. 만약 둘 중의 한명이라도 이를 믿지 않았다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의 대리인인 Runkel은 피고가 아무런 지식을 갖추지 않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야 했고 또 인정했어야 했다. 따라서 Runkel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작가의 신원(identity)에 관한 사항을 물론 작품의 질에 대한 Runkel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물론 피고의 유도가 없었더라면, Runkel은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의 사무실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Runkel이 그림을 검사할 때, 그는 이 그림이 문터의 작품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였고, 그 그림을 사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피고의 유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자신의 평가를 신

된 것이지, 작품에 대한 무지를 강조한 바 있는 피고의 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동산매매법 제13조 (1)의 “설명에 의한 동산매매의 경우, 물품이 설명과 일치할 것이라는 묵시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규정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설명에 의한” 매매라는 것이다. 권원(authority)은 별개로 하고, 이러한 문구는 설명이 매매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계약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내용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설명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2) Peco Arts Inc. v. Hazlitt Gallery Ltd. : 1982 P. No. 1223

A. 사건개요

미국 시민인 Curran 부인은 23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원고인 자신의 회사(Peco Arts Inc.)를 통해 드로잉, 파스텔, 과거 유명작가의 드로잉이나 회화 등 다양한 범위의 많은 미술품을 수집하였다. 피고(Hazlitt Gallery Ltd.)의 경영이사인 Baer는 다년간 미술품거래에 종사하였고, 피고 Hazlitt Gallery Ltd.도 잘 알려진 인정받는 화랑이었다.

Curran은 1970년에 지인이자 19세기 프랑스 드로잉 전문가인 Stephanie Maison으로부터, 유명한 수집가인 Villiers-David의 소장품에서 나왔다는, 두 개의 드로잉 작품을 살 것을 권유받았다. 그 중 하나는 앙그르(Ingres)의 작품으로 소개받았다. 피고의 화랑을 방문한 Curran은 이 앙그르의 드로잉이 파리에서 전시되었던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또한 이를 카탈로그를 통해 확인하였다. Curran은 작품의 진본성을 전혀 의심함이 없이 이를 18,000 달러에 사기로 결정하였다.

이 드로잉 작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Curran은 피고화랑에게 작품의 설명이 포함된 송장(invoice)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장은 파리에서의 앙그르 특별전에서 제작된 카탈로그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종이에 연필로 그린 원본 드로잉;
- 제목 : “터키 목욕탕의 연구”(Etudes Pour le Bain Turc);
- J.A.D. Ingres의 작품;
- 가격 : U.S. \$ 18,000
- 매매된 작품은 J.A.D. Ingres에 의한 원본 드로잉으로서 좌측 하단에 서명과 함께 다음의 문구가 적혀 있음 : “Theop. Gauthier씨에게, J. Ingres 1861”(J. Ingres à Monsieur Theop. Gauthier 1861).

Curran은 구입한 작품을 자기의 집에 걸어두었고, 수년간 그녀의 많은 친구들이 이를 보았으나 아무도 진본성을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1976년 해당 작품을 보험에 들 목적으로 Sotheby’s에 시가 감정(valuation)을 요청하였다. 이 작품의 시가감정을 담당한 Strauss는 여러 Sotheby’s 부서의 전문가들의 협조로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감정서에는 이 드로잉 작품의 진본성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1981년에 Curran은 유명화랑인 Somerville & Simpson Ltd.의 디렉터이자 판화와 드로잉 전문가인 Andrew Somerville씨에게 또다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Curran의 집을 방문한 Somerville은 작품을 햇빛에서 자세히 관찰한 후 의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작품의 액자를 완전히 분리하여 세밀히 검사한 결과 해당 작품은 원본이 아니라 재생된 것이라 평가하였다.

작품이 가짜임을 확인한 Curran은 피고회사에 해당작품을 찾아가고 구매대금을 돌려 줄 것을 청구하였다.¹¹⁸⁾

118) 본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을 피고가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영국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1980) 제32조 (1)(c)는 6년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시효는 원고가 청구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됨.”을 들어, 법원은 『원고가 해당 작품이 원본이 아님을 알 때까지 진지한 성의와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그

B. 법원의 입장

원고는 해당 작품이 카탈로그에 사진으로 실려 있고 또 파리에서 전시되었음을 나타내는 카탈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작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구나 명성이 있는 피고화랑으로부터 작품을 구매하여 그 진본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해당 작품에 부여한 것들(attribution by descriptions)은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구성한다.

3) 정 리

위 두 판결은 미술품의 실제 거래에서 진본성을 확실히 담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미술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체결 시에, 어느 누구도 해당 작품이 위작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해당 작품의 작가나 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진위감정(authentication)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법원이 동산매매법 제13조의 ‘설명에 의한 매매’ 규정을 미술품의 위작 거래에 적용하였다. 즉 미술품 매도인에게 「작품은 설명과 일치할 것」이라는 ‘묵시적 계약내용’(implied terms)을 위반한 경우,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함으로써 작품의 판매 전에 작품의 감정에 신중을 기하고, 매도인의 설명을 신뢰하여 미술품을 구매한 매수인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Harlingdon and Leinster Enterprises Ltd. v.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직업적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위의 두 판결을 기초로 ‘설명에 의한 매매’ 규정의 적용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소멸시효가 아닌, 미술품의 진본성에 관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설명(descriptions)은 카탈로그나, 송장(invoice)과 같은 문서의 형식 이든, 아니면 구두의 형식이든 상관없다.
- 설명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설명이 매도인에 의해 제시된 것이어야 한다.

2. 프랑스의 법적 대응

(1)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법적 책임

프랑스에서 미술품 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문제와 관련하여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 책임법리로 사기(dol), 하자 담보책임(garantie des défauts cachés de la chose vendue), 또는 착오(erreur)를 들 수 있다.

1) 사기(dol)의 적용문제

사기에 관하여는 프랑스 민법전 제11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동조 제1항은 “사기는 당사자 일방이 행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합의는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사기는 추정되지 않으며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⁹⁾

의뢰된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작품의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이나 감정사가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당연히 사기(dol)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뢰작품의 진본성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던 경우(이는 진본성에 관한 불확실성

119) Code civil, Article 1116 :

“Le dol est une cause de nullité de la convention lorsque les manoeuvres pratiquées par l’une des parties sont telles, qu’il est évident que, sans ces manoeuvres, l’autre partie n’aurait pas contracté.

Il ne se présume pas et doit être prouvé.□□

내지는 의심에 해당한다), 이 논쟁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이는 ‘사기적 침묵’(réticence dolosive)에 관련되는데, 학설과 판례는 침묵이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감춰진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¹²⁰⁾¹²¹⁾ 이는 예술품의 진본성에 관한 ‘논쟁의 존재’를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것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consentement)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만이 매도인 또는 감정사의 사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감정사나 경매사(기타 미술품 전문상인)들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재 및 이러한 기망행위가 당사자 간의 합의인 미술품 매매계약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하자담보책임(garantie des défauts cachés)의 적용문제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은 프랑스 민법전 제16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기대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래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액수로 매수하였을 정도로 물건의 용도를 감소시킨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를 담보할 의무를 부담한다.”¹²²⁾ 여기에서 하자(défauts)란

120) Cass. com., 27 oct. 1965, Bull. civ. III, 534, obs. Chevalier ; Cass. civ. 3^e, 15 janv. 1971, Bull. civ. III, 38, obs. Loussouran ; Cass. civ. 3^e, 3 fév. 1981, Dal. 1984.J.457, note Ghestin ; Cass. civ. 1^{re}, 19 juin 1985, J.C.P., éd. E., 1985.I.14834 ; Cass. civ. 3^e, 4 janv. 1991, D. 1992.S.196, obs. Tournafond ; etc.

121)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28호, 2005년 6월, 322면 참조.

122) Code civil, Article 1641 :

“Le vendeur est tenu de la garantie à raison des défauts cachés de la chose vendue qui la rendent impropre à l’usage auquel on la destine, ou qui diminuent tellement cet usage que l’acheteur ne l’aurait pas acquise, ou n’en aurait donné qu’un moindre prix,

물건의 기능(*bon fonctionnement*)과 견고성(*solidité*)을 감소시키는 결함(*défectuosité*), 즉 비정상(*anomalie*) 내지는 변질(*altération*)을 뜻한다.¹²³⁾ 그런데 ‘숨은 하자’(*défauts cachés*)란 표현이 의미하듯이, 하자가 물건의 인도 시에 이미 내재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발견될 수 없어야 하며¹²⁴⁾, 하자가 ‘용도에 부적절함’이나 ‘효용의 감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함으로써,¹²⁵⁾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여기에서 ‘용도에 부적절함’이란 기대된 용도에 완전히 사용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고, ‘기대된 용도’란 일반적으로 ‘통상의 용도’(usage normal)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품매매에서의 진본성 문제에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경우, 미술품의 진본성 문제가 물건의 일반적 ‘용도에 부적절함’이라는 하자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다.

3) 착오(*erreur*)의 적용

위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 법원은 미술품 또는 골동품매매의 진본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로 착오의 법리로 해결한다. 프랑스 민법전

s’il les avait connus.”

123) O. Tournafond, “Les prétendus concours d’action et le contrat de vente”, *Dal. chr.*, 1989, p. 238.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치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색상이나 외관과 같이嗜好(*agrément*)에 맞지 않는 것은 하자가 아니다. Ph. Malaurie & L. Aynès & P.-Y. Gauthier, *Les contrats spéciaux*, Defrénois, 2005, n° 387 참조.

124) 불민 제1642조 : “매도인은 명백한 하자 및 매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Code civil, Article 1642 : “Le vendeur n’est pas tenu des vices apparents et dont l’acheteur a pu se convaincre lui-même.”)

하자의 명백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매수인의 요건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는 직업적인 매수인과 비직업적인 매수인을 구별하여, 비직업적인 매수인의 경우 하자의 은밀성 내지는 하자의 인식불가능성을 쉽게 인정하는 편이나, 직업적인 매수인의 경우 하자의 존재를 인식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숨은 하자의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직업적인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의 존재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Ph. Malaurie & L. Aynès & P.-Y. Gauthier, *op. cit.*, n° 391 이하 참조.

125) 남궁술, “유럽연합 소비재매매지침의 프랑스 국내법수용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27집, 2007년 8월, 308면 참조.

제1110조 제1항은 “착오는 합의의 목적인 목적물의 본질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의 원인이 된다.”¹²⁶⁾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본질적 착오는 물건의 물질적 성질에 관한 착오(객관적 개념)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착오의 개념을 주관적이 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오늘날에는 ‘본질적 특질’(la qualité substantielle)에 관한 착오도 계약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질적 특질이란 착오자가 반대급부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결정적 특질’(la qualité déterminante)을 말한다. 이를 골동품 또는 예술품매매와 관련한다면, 골동품의 경우, 물건의 ‘오래됨’이 결정적 특질에 해당하고, 예술품의 경우, 작품의 ‘진본성’이 결정적 특질에 해당한다.¹²⁷⁾ 이러한 경우 착오자는 착오의 사실(즉 진본성에 관하여는 해당 미술품이 진품이 아니거나, 설명과는 다르다는 사실) 및 이것이 계약에서 ‘결정적 특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착오가 계약의 상대방인 감정사나 매도인의 과책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또는 경매의 경우 경매사의 과책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입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도 이들에게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의 요건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과책(faute)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A) 프랑스 민법상 과책(faute)의 범리

프랑스에서 계약상의 과책의 범리는 크게 ‘결과채무’(obligation de résultat)의 위반 범리와 ‘수단채무’(obligation de moyens)의 위반 범리로 구성되어 있다.

126) Code civil, Article 1110 :

“L’erreur n’est une cause de nullité de la convention que lorsqu’elle tombe sur la substance même de la chose qui en est l’objet.

Elle n’est point une cause de nullité lorsqu’elle ne tombe que sur la personne avec laquelle on a intention de contracter, à moins que la considération de cette personne ne soit la cause principale de la convention.□□

127) Ph. Malaurie & L. Aynès & Ph. Stoffel-Munck, Les obligations, Defrénois, 2005, n° 500.

‘결과채무’(obligation de résultat)란 채무자가 어떤 특정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무를 말한다. 당시 사회의 일반적 상황 또는 객관적인 과학수준 상 특정결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수단채무)를 제외한, 기타 채무는 보통 ‘결과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채무는 성의 있는 채무자라면 일반적으로 그 제공이 가능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인 특정 결과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하자 있는 상태로 제공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추정된다. 즉 이 경우 채권자가 계약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과책(faute)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이행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제3자의 행위(le fait d’un tiers)’와 같은 ‘외래원인(cause étrangère)’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¹²⁸⁾

이와는 달리, ‘수단채무’(obligation de moyens)라 함은 채무자가 일정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모든 주의와 성의를 다해야 하나, 성질상 그 결과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계약상의 채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의사의 진료의무를 들 수 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주의를 다하여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병의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단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주의나 불성실을 입증해야 한다.¹²⁹⁾

B) 鑑定상 오류에 관한 감정사 또는 경매사의 과책

프랑스는 감정사의 감정의무를 ‘결과채무’(obligation de résultat)가 아닌 ‘수단채무’(obligation de moyens)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감정사는 의뢰된 물품이 진품인지 또는 위작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할 의무를 부

128) <obligation de résultat>, 프랑스 법령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129) <obligation de moyens>, 프랑스 법령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답하지는 않는다. 즉 의뢰품의 감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진위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과학기술수단을 동원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자료의 참조는 물론 다른 전문가에게도 의뢰하여야 한다.¹³⁰⁾

따라서 감정사는 반드시 의뢰물품의 정확한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감정인증서(certificats d'authenticité)상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고, 이러한 오류의 존재에 감정사의 부주의(imprudence)가 인정되면 그는 의뢰인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책임법리는 경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경매 카탈로그(catalog)상의 부정확성(inexactitude)으로 인해 낙찰자(adjudicataire)가 손해를 입었다면 경매사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¹³¹⁾ 이와 관련하여, 카탈로그(catalog)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사의 낙찰자

130) 자세한 것은 www.fnepsa.fr 참조.

131) 이 경우, 경매사가 낙찰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을 프랑스는 불법행위책임(responsabilité délictuelle)으로 보고 있다. 즉 매도인(의뢰인)과 경매사는 위임관계에 해당하지만(프랑스 상법전 L321-4조), 경매사와 낙찰자의 관계는 아무런 계약상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상법전 L321-4조 :

“① 동산임의경매 전문회사의 기능은 본장에 정해진 조건 하에서의 동산의 임의경매의 조직과 실현, 그리고 동산의 가치평가에 한한다.

② 동산임의경매 전문회사는 동산 소유자의 위임인으로서 행한다. 동산임의경매 전문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매에 의뢰된 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다. (...)□□

(Code de commerce, Article L321-4 :

“L'objet des sociétés de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 est limité à l'estimation de biens mobiliers, à l'organisation et à la réalisation de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 présent chapitre.

Les sociétés de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 agissent comme mandataires du propriétaire du bien. Elles ne sont pas habilitées à acheter ou à vendr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our leur propre compte des biens meubles proposés à la vente aux enchères publiques. (...)□□

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즉 별도로 경매사의 과책이 요구되는가?), 프랑스 판례는 경매사의 과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¹³²⁾

판례에 의해 인정된 경매사의 과책의 예로, 『가능한 한 모든 의구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감정이나 조사 없이, 작가의 상속인의 견해에만 의존한 경우』¹³³⁾, 『진지하고 보충적인 검증 없이, 기존 카탈로그나 책자의 인용에 만족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경매물품의 진위여부는 물론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사는 경매물품 감정에 있어 관련분야의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경매사와 감정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¹³⁴⁾ 물론 2000년 7월 10일 법률의 공포 이후, 경매사는 ‘동산임의 경매심의회’의 인가를 받은 감정사에게만 경매물품의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도 전술한 바와 같다.

(2)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프랑스의 특별입법

아무리 체계적인 감정제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실제 감정행위가 정밀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감정서작성에서 평가내용이 모호하게 작성된다면, 진본성평가에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매매증명서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 및 감정서 작성 시 설명에 활용되는 각 표현문구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해당 문구의 의미를 법규로 정함으로써 감정서를 통한 오해나 착오, 심지어는 사기방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였다. 이것이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132) Cass. civ. 1^{re}, 22 avr. 1997, Bull. civ. I, n° 129.

133) Cass. civ. 1^{re}, 28 nov. 1995.

134) 프랑스 상법전 L321-31조 제2항 참조. 전술.

데크레”(Décret n° 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이다.

1) 매매증명서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

우선 이 데크레의 제1조는 매매관련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즉 “수집품 또는 예술품의 매도인 또는 그의 수입인은 물론, 공경매를 진행하는 공무원(officiers publics) 내지 자격인(personnes habilitées)은, 양수인의 요구에 의해, 매도물의 본질, 구성, 출처, 오래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납품서(facture), 영수증(quitance), 매도명세서(bordereau de vente) 또는 공매조서(procès-verbal de la vente publique)를 인도해야한다.” 따라서 매도물의 본질, 구성, 출처, 오래됨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¹³⁵⁾

2) 설명서 작성에 활용되는 문구의 의미

본 데크레 제2조 이하는 감정서나 카탈로그와 같은 설명서에 활용되어야 할 문구 및 그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A. 오래됨(ancienneté)

오래됨에 관하여 제2조는,

- 1항에 “매매목적물의 명칭 다음에 유일하고 직접적으로 한 역사적 시대(une période historique)나 세기(une époque ou un siècle)가 언급됨은 매수인에게 ‘이 물품이 언급된 시기에 실제로 제작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 2항에 “목적물의 일부가 이후시기에 제작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35) 이 데크레 제1조는 2001년에 수정되어 현재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7월 19일 데크레 제69조(Décret n°2001-650 du 19 Juillet 2001 - art. 69) 참조.

B. 작 가(auteur)

작가에 관하여, 제3조는,

- 제1항에 “진본성에 관한 유보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품에 포함된 특정예술가의 서명(signature)이나 검인(estampille)의 표시는 언급된 예술가가 본 작품의 실제작가임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 제2항에 “『의해서(par)』 또는 『로부터(de)』라는 용어에 이어서 예술가의 명칭이 언급된 경우도 전항과 같다.”고 하며;
- 제3항에 “작품명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예술가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였다.

제 4 조는,

“『...에게 부여된(attribué à...)』라는 용어에 이은 특정예술가의 언급은 해당 작품이 언급된 예술가의 활동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언급된 예술가가 본 작품의 진정한 작가임을 강하게 추정한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작가의 진위성에 관하여 완전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표현되어야 할 용어를 지정하였다.

제 5 조는,

제1항에 “『..의 작업장(atelier de...)』이라는 용어 다음에 특정 예술가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해당 작품이 언급된 예술가의 작업장에서 또는 그의 지도하에서 제작되었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위의 작업장이 가족들에 의해 동일한 명칭으로 수 세대에 걸쳐 유지된 경우에는, 작업장의 언급 다음에 반드시 제작시기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6 조는,

- 제1항에 “『...과의(école de...)』라는 용어 다음에 특정 예술가의 이름이 따르는 것은 해당 작품의 작가가 언급된 예술가의 수련생이었으며 특히 그의 영향과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보장한다. 이 용어

는 해당 작품이 위 예술가의 생존 시 또는 사망 후 50년 이내에 제작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 “특정 장소(un lieu précis)가 언급된 경우, 「…파의(école de…)」라는 용어의 사용은 해당 작품이 지정된 장소의 예술운동의 활동기간에 제작되었음을 보장하며, 이 경우 그 운동의 시기와 참여한 작가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제7조는,

“「…의 취향에서(dans le goût de)」, 「양식(style)」, 「…한 방식으로(manière de)」, 「…의 장르(genre de)」, 「…에 의거하여(d’après)」, 「…의 방법으로(façon de)」 등의 표현은 작가의 신원, 작품의 시기 또는 학파에 관한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3) 진본성문제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입장

위작가능성이 주로 제기되는 작품은 역사성이 있는 유명작가의 작품이다. 오래된 작품의 경우 또는 뛰어난 위작기술에 의해 제작된 경우,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란 아무리 경륜 있는 감정사라 할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진본성판단결과의 상대성은 작품 감정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또는 감정서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오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전술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데크레는 실제로 법원의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진본성에 관한 법적 분쟁은 단순한 진위여부 뿐 아니라 제작시기의 상이, 불명확성(진본성에 관한 단순한 의구심) 등 다양하고 세밀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 프랑스 법원은 착오(erreur)를 주로 원용함을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진본성에 관한 착오의 경우, 프랑스 민법 제1110조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본성의 상대성을 고려할 때, 진본성의 어느 정도까지의 착오를 계약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느냐에 있다.¹³⁶⁾

이 문제에 관하여, 최근의 몇몇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반 고흐의 “Jardin à Auvers”

(TGI Paris, 3 mai 2000 ; CA Paris, 1re ch. A, 7 mai 2001)

A. 사건의 개요

1955년 7월 27일에 Jacques Walter는 미국 뉴욕의 Knoedler & Co. Inc.라는 화랑에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작품으로 소개된 “오베르의 정원”(Jardin à Auvers)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15,371,000 프랑(francs, 당시의 舊 프랑)에 매입하였다.

프랑스 문화 및 통신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는 이 작품을 1989년 7월 28일 프랑스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해당 작품을 해외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Jacques Walter는 1992년 9월에 프랑스 정부에 해당 작품의 국제판매추정가와 국내 판매추정가 사이의 차액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1994년 7월에 파리고등법원은 그에게 145,000,000 프랑의 보상금을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등법원 소속 감정사는 이 작품을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작품으로 평가하였고, 프랑스 국립 박물관의 실험실도 이 작품을 1889년의 생레미(Saint-Rémy)지역에서 1890년까지의 오베르(Auvers)지역의 생활동안 반 고흐의 창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물론 반고호의 여러 유명작품들과 그 기법이나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고 평가하였다.¹³⁷⁾

136) 그러나 계약 체결 시에, 양 당사자가 진본이 아닐 가능성 내지는 진본성에 관하여 논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진위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만 착오를 구성할 수 있다.(l'aléa chasse l'erreur!)

137) 이와는 반대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평가가 위낙 권위 있는 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간 동안에 1992년 Jacques Walter는 이 작품을 파리의 Hotel Drouot에서 진행되는 경매에 내놓았다.

S.C.P. Binoche & Godeau에 의해 진행된 경매 상의 카탈로그에는 “Jardin à Auvers, 유화, 64 x 80 cm, Vincent van Gogh에 의해 1890년 제작”이라 명시되었다.

이 작품은 1992년 12월 경매에서 위 카탈로그상의 표시에 기초하여 Jean-Marc Vernes에게 55,000,000 프랑에 낙찰되었다.

1995년 이후부터 이 작품의 진본성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심을 표명하는 여러 감정사들의 글이 신문에 기고되었다.

Jean-Marc Vernes의 사망 이후, Vernes의 상속인들은 이 작품의 매매를 시도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25,000,000 프랑의 가격으로 이 작품을 경매에 내놓았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Vernes의 상속인들은 Jean-Marc Vernes의 위 작품에 대한 본질적 착오(erreur substantielle)를 이유로 1992년에 Jean-Marc Vernes와 Jacques Walter 사이에 체결된 위 작품의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B. 2000년 5월 3일 파리지방법원 판결(TGI Paris, 3 mai 2000)

Jean-Marc Vernes는 취득한 작품의 진본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매매 이후 1995년부터 제기된 작품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하자를 구성할 수 없다. 작품의 진본성 결함에 관한 설득력 있는 입증만이 착오에 기초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된다.

문제된 작품이 프랑스정부에 의해 문화재로 인정되었고, 권위 있는 감정사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 원래의 소유자인 Jacques Walter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파리고등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작품이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반 고흐가 점묘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점묘로 그려진 본 작품이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그리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본 작품이 위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Amédée Schuffenecker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1992년 매매 당시, Jean-Marc Vernes가 이러한 출처를 알았더라면¹³⁸⁾ 이 작품의 취득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25,000,000 프랑의 경매가격에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문제 작품의 가치의 하락은, 이러한 손실이 외부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매도인이나 경매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C. 2001년 5월 7일 파리고등법원 판결(CA Paris, 1re ch. A, 7 mai 2001)

1992년 문제 작품의 경매 당시에, 카탈로그에는 전문 감정사의 확인이 있었고, 이러한 카탈로그상의 내용은 매수인인 Jean-Marc Vernes에게 있어서 문제 작품의 본질적 특질(une qualité substantielle)을 구성함에는 분명하다. 더불어 카탈로그에는 경매사가 해당 작품이 반 고흐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밖에 문제 작품이 프랑스정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에 카탈로그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취득자인 Jean-Marc Vernes는 문제 작품의 진본성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상당한 가격으로 해당 작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Vernes의 상속인들이 제시한 1995년부터 나타난 문제 작품의 진본성을 의심하는 여러 자료들은 언론을 통해 나타난 단순한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는다. 즉 Le Figaro지의 기자인 Tassot, 수집가이자 아마추어 예술가인 Rodriguez, 회화에 관한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

138) 1992년 경매 당시 경매사에 의해 작성된 카탈로그에는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의 작가이자 전문가인 Husler 박사 등이 언론에 제기한 견해는, 이전에 권위 있는 감정사와 기관에 의해 확인된 문제 작품의 진본성에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D. 주 석

이 파리고등법원의 판결과 앞의 파리지방법원 판결은 차이가 있다. 즉 파리지방법원은 「작품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하자를 구성할 수 없고, 작품의 진본성 결함에 관한 설득력 있는 입증만이 착오에 기초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데 반해; 파리고등법원은 「매매 이후에 작품의 진본성에 대해 의심이 발생하는 것도 ‘본질적 착오’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일으킬 수 있으나, 그러한 의심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¹³⁹⁾

2) Daniel Spoerri의 “Mes petits-déjeuners, Tableau-piège”

(TGI Paris, 11 mars 1988 ; CA Paris, 1re ch. A, 18 oct. 1999 ; Cass. civ. 1re, 15 nov. 2005)

A. 사건의 개요

Daniel Spoerri라는 작가를 좋아하는 한 미술품 애호가가가 1993년 9월 29일에 한 미술품 경매에 참가한다.

경매의 카탈로그에는 다음의 문구가 적힌 작품사진이 실려 있었다. : “52, Daniel Spoerri, 나의 아침식사, 1972. ‘함정이 있는 그림’(Tableau-piège) : 목판에 접시와 여러 사물들(objets)이 붙어 있음. 작품의 뒷면에는 작가의 글과 「1972년 2월-3월에 파리 17구에서 받아들임.」 이라는 문구가 있음. 뒷면에 또한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음. 80 x 45 cm.”

139) Ch. Lachière, “Ombre et lumière sur les ventes d’oeuvres d’art”, Petites affiches, 4 avril 2002, n° 68, p. 17 이하.

이 애호가는 Tableau-piège라는 작품을 38,325 프랑(francs)에 구입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작품의 매수인인 애호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는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자기 작품의 전시 중에, Daniel Spoerri는 방문객들에게 작품들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그들에게 “앞으로 받아들여지고 진본성이 부여될 장래의 작품 뒤에 붙여질 백지의 보장 허가증”을 주었다. 약속한 날짜에, 작가는 그들에 의해 제작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선 나온 작품 중의 하나가 11세의 아동이 제작한 “Tableau-piège”로서, 그 뒤에는 다음의 문장에 적혀 있다. “나의 tableaux pièges를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지 마시오. 이것은 하나의 정보요 선동입니다...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지시입니다... Guy Marzaquil의 허가 하에 제작,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 나는 보증합니다.” 라는 문구를 쓰고, 장소와 날짜를 표시한 뒤 사인함(“1972년 2월-3월 파리 17구에서, signature”)

실제로 이 작품은 1972년에 프랑스 현대미술관(le Centre national d'art contemporain)에 전시된바 있었다.

이 작품이 Daniel Spoerri에 의해 실제 제작된 것이라 믿고 경매에서 구입했던 매수인은 이 작품이 11세의 아동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 작품의 매입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작품의 본질적 특질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A. 1998년 3월 11일 파리지방법원 판결(TGI Paris, 11 mars 1988)

Daniel Spoerri는 신사실주의(Nouveau Réalisme)의 위대한 선구자 중의 한명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그런데, Daniel Spoerri가 “나의 아침식사”(Mes petits-déjeuners)라는 제목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진본화 과정’(process d'authentification)을

인위적으로 연출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작품의 매수인에게 카탈로그가 어떠한 정보를 주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카탈로그는 Daniel Spoerri가 직접 이 작품을 제작한 것처럼 믿게 했으며 또한 “작품의 실현과정에 관한 어떠한 적극적이고 설명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작가의 개인적인 실행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카탈로그상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작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데 ‘본질적 특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매매에 관한 동의(consentement)는 하자가 있는 것이다.

B. 1999년 10월 18일 파리고등법원 판결(CA Paris, 1re ch. A, 18 oct. 1999)¹⁴⁰⁾

한 작품의 작가는 물질적으로 이를 창조한 자일 수도 있고, 작품이 실행되게끔 하는 자일 수도 있다. Spoerri는 “Tableau-piège”가 실행되기를 원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그가 선택한 것들을 진본으로 보증하고자 했다. 이점은 작품의 뒷면에 적힌 문구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요건에서, 작품은 분명 원작품이며, 경매사는 작품에 있는 서명을 작가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작품의 작가는 여러 지시를 통해 그리고 자기의 통제 하에서 작품이 만들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에 있는 이름의 언급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1981년 테크레 제3조¹⁴¹⁾의 의미에서도 진본성을 보장한다.

C. 2005년 11월 15일 파기원 판결(Cass. civ. 1re, 15 nov. 2005)

어떠한 작품의 실질적인 제작자는 작품 또는 오브제(objet)를 직접 실현하는(réaliser) 자는 물론 작품을 개인적으로 실행하는(exécuter) 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¹⁴²⁾

140) 파리고등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141) 제3조 1항 : “진본성에 관한 유보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품에 포함된 특정 예술가의 서명(signature)이나 검인(estampille)의 표시는 언급된 예술가가 본 작품의 실제작가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142) 여기에서 ‘실현하다’(réaliser)는 행위의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의도하

경매에서의 카탈로그에 Daniel Spoerri가 작품 뒤에 적은 글만을 표시한 것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본 작품이 Daniel Spoerri에 의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확신(잘못된 확신)을 야기하였고, 문제 작품이 실제로는 제3자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경매사는 책임을 부담한다. 즉 경매사는 카탈로그에 작품의 실질적인 제작자인 작품 또는 오브제(objet)를 개인적으로 실현하거나 실행하는 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이점은 경매에 있어서 경매 물품의 진본성 부여에 본질적 요건이다.

D. 주 석

이 사건은 Marcel Duchamp의 “Ready Made” 이후 제기된 예술의 진본성에 관한 본질적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게 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즉 일상적으로 흔한 생활용품을 전혀 예상지 못한 장소에 놓고 예술가가 서명을 함으로써 진본성이 있는 물건으로 전환시킨 극적인 작품인 “Ready Made”(실제는 공장에서 제작된 변기)는 Marcel Duchamp이라는 예술가에 의해 제작된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조품도 아니다. 이는 전혀 진본성이 없는 물건을 진본성이 있는 제작물로 전환시키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Marcel Duchamp은 끊임없이 파괴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론, 예술가는 해체되었다. 그를 창작자이게 하는 내적 설비는 발가벗겨 졌다. 다른 한편으론, 어떠한 물건이나 존재도, 예술가에 의해서 작품으로 지정되는 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와 작품 사이의 헌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는 따라서 이중으로 파괴되었다. 작가는, 스스로를 하나의 장치로만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창작가가 아니며 ; 작품은, 단지 작가에 의해

는 바를 성취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실행하다’(exécuter)는 자율적인 결정보다는 외부적 요소에 의해 정해진 과제를 실천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되어진 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작가의 ‘인성’(personnalité)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작과정에서 작가와 작품이 분리되어, 주체도 없고 창작도 없는 상태에서, 작품의 진본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현대 예술의 문제인데, 이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된 것이 이 사건이다.

Daniel Spoerri가 속한 신사실주의학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 작가의 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물들을 통해서 현실의 ‘시각이나 다양한 모습’(vision)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본성은 작가의 손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선택한 사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vision)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리고등법원은 문제된 카탈로그에 Tableau-piège가 Daniel Spoerri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된 것처럼 표현된 사실이 이 작품의 진본성 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은 예술적 관점에서 진본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순수한 법률적 입장에서 본 사건을 다루고자 하였다. 즉 1981년 데크레 제3조에서 지시하는 것은 “언급된 예술가가 작품의 실질적인 작가임을 [카탈로그나 감정서 등이]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작가에 해당할 수 있는 제3자, 즉 작품을 실제로 제작한 자 또는 실행한(exécuter) 자가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Daniel Spoerri만을 카탈로그에 명시한 것은 『마치 Daniel Spoerri가 해당 작품을 직접 실현한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croyance érronée)을 매수인에게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경매사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파기원은 판결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이 예술의 진본성에 관한 Marcel Duchamp이나 ‘신사실주의’(Nouveau Réalisme)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정법적 견지에서 경매사가 카탈로그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매사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⁴³⁾

3) ‘Sesostris III’

(TGI Paris, 31 janv. 2001 ; CA Paris, 25 mars 2002 ; Cass. civ. 1re, 27 fév. 2007)

A. 사건의 개요

1998년 11월 10일에 한 부부 수집가가 Hotel Drouot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이집트의 중왕국(2050BC - 1100BC) 시대의 파라오인 Sesostris III 세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 조각상을 약 700만 프랑(francs)에 구입하였다. 이 조각상은 Sesostris III세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구입 후에 이 조각상의 진본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을 알았다. 사실 이 조각상은 비벼서 변조한 것 같은 조잡한 자국을 가지고 있었고, Drouot 경매에서 낙찰될 때까지 여러 박물관에 매입이 요청되었었다.

매수인은 여러 명의 이집트 전문감정사에게 문제 조각상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 결과, 이들 감정사의 공통된 견해는 이 조각상이 Sesostris III세(제12왕조, 1878BC-1843BC) 시대에 제작된 것이 아니며 제작연대에 관하여 많은 의심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조각상이 Sesostris III세의 생존 시 제작된 경우 파라오와 함께 피라미드에 봉헌된 물품이며, Sesostris III세의 사망 후에는 Sesostris III세의 추모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Sesostris III세가 당시의 왕실조각품은 우수한 고전양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143) Cf. B. Edelman, “L’erreur sur la substance ou l’oeuvre mise à nu par les artistes, même!”, Dal. Chr. 2003, n° 7, p. 436 et s. ; A. Trocoire, “La cour de cassation au secours des victimes de l’art contemporain : le tableau-piège se referme sur Spoerri”, Dalloz Jurisprudence, 2006 n° 16, p. 1116 et s. ; J. Ickowicz, “L’auteur effectif s’étend de celui qui réalise ou exécute personnellement l’oeuvre ou l’objet”, J.C.P. n° 24, 14 juin 2006, p. 1180 et s.

전문감정사들의 견해를 듣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본질적 특질’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 2001년 1월 31일 파리지방법원 판결(TGI Paris, 31 janv. 2001)

법원에 의해 지명된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들의 정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조각상은 Sesostri III세를 기념하는 유일한 조각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 조각상은 BC1850에서 BC1720 사이에 아마도 중왕국의 제12왕조(1878BC-1843BC) 말기부터 존재해온 왕립작업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조각상은 커다란 가치를 지닌 역사적 유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할 때, 이 조각상의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조각상은 중왕국 말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Sesostri III세를 기념하는 조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감정사들은 이 조각상을 “매우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 예술적 가치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조각상은 Sesostri III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틀림이 없으며, 제작시기도, 중왕국 의 제12왕조 말기부터이든 아니면 경매 시 표시된 대로 Sesostri III세 시대에 제작되었든, 중왕국 시대이다. 원고(매수인)는 문제의 조각상이 Sesostri III세 시대에 제작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왜 작품의 가치평가에 중요하고 또 작품을 매입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전문감정사들은 이 조각상은 동종의 유물에서 유일하고 예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취득한 작품의 ‘본질적 특질’에 대한 착오는 그 이유가 없다.

B. 2002년 3월 25일 파리고등법원 판결(CA Paris, 25 mars 2002)

원고는 매매 시 카탈로그에 명시되었던 감정사의 조각상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분명히 읽었다. : “이 조각상에는 최근에 긁혀진 것으로

여겨지는 두 줄의 이집트 상형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각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아주 단순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나 본 조각상에는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 상형문자가 조각상 전체의 예외적인 가치와 완전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조각상의 진본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진본성에 관한 ‘잘못된 확신’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논의의 여지도 없다. 감정사들의 견해도 불구하고, 작품의 진본성에 관해 제기되는 여러 의심들은 원고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위험인 것이다.

C. 2007년 2월 27일 파기원 판결(Cass. civ. 1re, 27 fév. 2007)

불민 제1110조의 착오와 1981년 데크레에 기초하여 원고의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1981년 데크레 제2조 1항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명칭 다음에 유일하고 직접적으로 한 역사적 시대(une période historique)나 세기(une époque ou un siècle)가 언급됨은 매수인에게 『이 물품이 언급된 시기에 실제로 제작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매 시 매수인이 참조한 카탈로그에는 “화강섬록암(granodiorite). 이집트. 중왕국 시대(제12왕조, BC1878-BC1843) 부분적으로 다듬은 흔적(Mr. H.E.의 상속, 특별소장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매입 후,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조각상이 고대의 조각상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코 Sesostris III세의 통치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며, 대략 Amenemhat III세와 Sebekhotep IV세 사이의(BC1850-BC1720) 중왕국의 말기부터 존재해온 왕립작업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조각상은 Sesostris III세를 기념하기 위해 등글고 융기된 모양으로 제작된 조각상이다. 카탈로그 상의 제작시기와 감정사들에 의해 평가된 제작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

는 물건의 본질(본질적 특질)에 관한 착오에 기한 매매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1981년 데크레 제2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카탈로그 상의 제작시기에 대한 부정확성은 착오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D. 주 석

본 사건의 핵심은 골동품의 제작시기의 착오가 ‘본질적 특질’에 관한 착오로 인정되는가이다. 물론 ‘오래됨’은 골동품의 가치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세기 정도의 차이가 있는 착오라면 당연히 ‘본질적 특질’의 착오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로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착오의 기간이 1세기도 안 되는 차이에 불과하다. 즉 카탈로그 상의 제작시기는 제12왕조 시대인 BC1878-BC1843인데, 감정 결과 추정된 제작시기는 BC1850-BC1720이므로, 한 50년에서 70년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오래됨’을 고려할 때, 파리지방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이 정도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파기원은 1세기 미만의 시기상의 착오도 ‘본질적 특질’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파기원의 태도는 우선 「조각상이 Sesostris III세의 생존 시 제작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가치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¹⁴⁴⁾ 또한 파기원은, 앞의 “Tableau-piège” 사례에서도 같은 입장이지만, 경매에서 제시되는 카탈로그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144) 즉 전술한 바와 같이, Sesostris III세 시대에 제작된 것은 파라오와 함께 피라미드에 봉헌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여되는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Sesostris III세 당시의 왕실조각품은 우수한 고전양식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작성한 경매사에게 일종의 보장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 즉 1981년 데크레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미술품의 경매 시 카탈로그나 감정서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장래 법적 분쟁의 예방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감정과 경매제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다수의 유능한 미술품전문 감정사와 경매사가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조차도,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완전한 진본성의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미술시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선 진본성 확보방안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진본성 확보방안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의 법적·제도적 특성 비교

(1) 감정 및 경매제도

미술품 전문 감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도 공식적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에도 국가공인의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감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영국의 경우,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시장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미술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감정업무가 행해지고 있는데 비해 ; 프랑스의 경우, 사법감정사(expert judiciaire)제도 및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 par

le 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de meubles aux enchères publiques)제도를 통해 권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업무가 행해지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진위감정(authentication)이나 시가감정(valuation) 등의 감정서비스가 여러 전문단체나 경매회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특히 대영박물관의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미술 시장이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규모도 크며, 그에 따른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경매사에 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확연히 구분된다.

영국의 경우, 감정사와 마찬가지로, 경매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모의 경매회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경매사가 양성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만이 경매사(commis-seur-priseur)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는 2000년 이후 사법경매사(commis-seur-priseur judiciaire)와 일반 경매사(commis-seur-priseur)를 구분하여, 강제경매인 司法경매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사법경매사(commis-seur-priseur judiciaire)에 의해 진행되고, 이들은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감정사와 경매사 양성을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연구소, 박물관, 기타 감정단체 및 경매회사를 통해 매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영국의 Sothebys나 Christie’s 경매회사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은 주목할 만하고, 프랑스 에콜 루브르(Ecole de Louvre)의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은 장차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2. 진본성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우선 미술품전문 감정사, 경매사, 매도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은 위작이 거래의 대상이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거래과정에서 의뢰인 또는 매수인에게 제시한 감정서 또는 구두나 문서(예 : 카탈로그)에 의한 설명(descriptions)이 실제로 관련미술품과 일치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미술품의 거래과정에서 구두 또는 문서상의 어떠한 보장이나 단언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술품이 실령 위작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19세기 작품이라 여겨지는데 확실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 등과 같은 단순한 견해의 표명(statement of opinion)도 귀책사유가 아니다. 즉 「19세기 x의 작품이다.」 등과 같은 단언적 표현만이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영국의 경우,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scription Act 1968)¹⁴⁵⁾, 민사책임인 ‘묵시적 보장책임’(Implied Warranty)을 규정한 ‘1979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등이 미술품전문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책임부과에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착오(erreur)의 법리(프랑스 민법전 제1110조),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테크레”(Décret n° 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등이 미술품전문 감정사, 경매사 또는 매도인의 책임부과에 적용되고 있다.

145) 현재 ‘거래상 허위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에 관한 책임이 ‘2008년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 2008)에 편입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러한 법률들도 모두 계약체결과정에서 제시된 ‘설명’(descriptions)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음은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판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미술품 감정사나 경매사 또는 매도인에 의해 제시되는 설명(descriptions)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감정서나 카탈로그가 이들에 대한 책임부과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서나 카탈로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작성되는냐는, 법률적인 면에서, 제시된 설명에 대한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술품 매매 시 제시되어야 하는 설명의 양식과 용어 및 그 법적 의미를 규정한 프랑스의 ‘1981년 3월 3일 데크레’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2.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미술품 전문감정사(experts)나 경매사의 기능과 이들의 양성이 매우 제도적으로 잘 보완되어 있다. 이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그 규모 면에서 위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따라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미술품전문 감정사나 경매사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기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위작 미술품의 거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의 실천

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인증감정사제도의 도입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감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분화된 문화미술품과 그에 따른 지식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감정사 자격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미술품 감정사로 활동하는데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전혀 없고, 결국 이들의 미숙하고 자의적인 감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제도와 같은 국가인증감정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미술품 감정사의 자격을 국가 공인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이, 감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일정한 요건(학력, 경력)을 갖춘 자들을 국가기관이 선정하여 인증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인증감정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첫째,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감정사들은, 국가인증감정사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와 신의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미술품 감정을 행하게 되고 더불어 감정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도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증감정사제도는 우리나라 미술품 감정의 신뢰도와 감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감정을 위해 가능한 한 국가인증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인증감정사들의 감정업무가 활성화된다.

이는 미술품 감정사가 감정업무 만으로도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감정사를 양산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셋째, 미술품 감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미술품의 감정업무와 매매업무가 분리되어 미술품감정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향상될 것이고, 나아가 미술시장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인증감정사제도를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프랑스의 경우, 사법부의 주도 하에 감정사인증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사법감정사에는 미술전문가 뿐 아니라, 의학, 화학,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법적 분쟁에서 이들 제반 분야의 전문적 감정이 법적 판단과정에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프랑스와 같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감정사 인증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이를 사법부의 관리 하에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우선 미술품전문 감정사에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행정부, 즉 문화관광부가 관장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전문분야의 경우 여러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비해, 미술품전문 감정분야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고, 이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미술품전문 감정사에만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굳이 사법부의 관리 하에 둘 이유가 없으며, 문화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미술품 감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문화관광부에서 인증한 감정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인증에 필요한 절차나 요건, 그리고 인증 받은 감정사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프랑스의 ‘사법감정사제도’나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제도를 참조하여 마련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미술품관련 감정서나 카탈로그 작성의 요식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

프랑스의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테크레’와 같이, 미술품매매와 관련된 ‘감정서’나 카탈로그의 작성에 필요한 요건과 용어 및 그 법적 의미를 정형화 하는 입법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첫째, 미술품관련 감정서나 카탈로그 작성의 요식화는 미술품전문 감정사나 경매사 또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감정서나 카탈로그 또는 설명서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앞의 프랑스 판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감정서나 카탈로그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및 사용되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미리 정함으로써, 미술품매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 시 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미술품감정에 관한 첨단과학기술법의 도입 및 개발

미술품감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정결과의 상대성 문제는 앞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술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작의 유통비율도 높아지고 위작기술도 발달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¹⁴⁶⁾ 따라서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146) 수많은 유능한 미술품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도, 거래되는 미술품의 10-40%가, 경매회사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15%가 위품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앞의 주 24 참조.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작을 분별하고 미술품 가치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과학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영국의 경매시장에서 1,500 달러에 거래된 바 있는 “The Holy Infants”이라는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미술사적 지식과 미적 감수성보다는 오히려 실험실의 과학적 분석에 의존했다고 한다. 즉 현미경에 의한 표면조사, 액자에서 분리한 조각의 탄소연대측정, 물감분석을 위한 고에너지 양성자(proton)의 투여, 지문전문가와의 의뢰 등의 작업이 그것이다.¹⁴⁷⁾ 오늘날의 권위 있는 미술품 감정사들 중에는 전통적인 미술사학자들도 있지만, 과학자들도 많다고 한다. 영국의 ‘Oxford Authentication’사의 책임자가 본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도임을 앞에서 살핀 바 있다.

- (4) 그밖에 한국소재 미술품의 DB화, 경매나 아트페어와 같은 개방형 미술시장의 활성화, 미술품 감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제안은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의 꾸준한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147) P. J. Kiger, “Art Authentication”, <http://dsc.discovery.com> 참조.

부 록

프랑스의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 3일 데크레”)

Article 1

(Modifié par Décret n°2001-650 du 19 juillet 2001)

Les vendeurs habituels ou occasionnels d’oeuvres d’art ou d’objets de collection ou leurs mandataires, ainsi que l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et les personnes habilitées procédant à une vente publique aux enchères doivent, si l’acquéreur le demande, lui délivrer une facture, quittance, bordereau de vente ou extrait du procès-verbal de la vente publique contenant les spécifications qu’ils auront avancées quant à la nature, la composition, l’origine et l’ancienneté de la chose vendue [*mentions obligatoires*].

제 1 조

(2001년 7월 19일 데크레 2001-650호에 의해 개정됨)

수집품 또는 예술품의 매도인 또는 그의 수입인은 물론, 공경매를 진행하는 공무원 내지 자격인은, 양수인의 요구에 의해, 매도물의 본질, 구성, 출처, 오래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납품서, 영수증, 매도명세서 또는 공매조서를 인도해야한다. [필수적 기재사항]

Article 2

La dénomination d’une oeuvre ou d’un objet, lorsqu’elle est uniquement et immédiatement suivie de la référence à une période historique, un

siècle ou une époque, garantit l'acheteur que cette oeuvre ou objet a été effectivement produit au cours de la période de référence.

Lorsqu'une ou plusieurs parties de l'oeuvre ou objet sont de fabrication postérieure, l'acquéreur doit en être informé.

제 2 조

- ① 매매목적물의 명칭 다음에 유일하고 직접적으로 한 역사적 시대나 세기가 언급됨은 매수인에게 '이 물품이 언급된 시기에 실제로 제작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② 목적물의 일부가 이후의 시기에 제작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 3

A moins qu'elle ne soit accompagnée d'une réserve expresse sur l'authenticité, l'indication qu'une oeuvre ou un objet porte la signature ou l'estampille d'un artiste entraîne la garantie que l'artiste mentionné en est effectivement l'auteur.

Le même effet s'attache à l'emploi du terme "par" ou "de" suivie de la désignation de l'auteur.

Il en va de même lorsque le nom de l'artiste est immédiatement suivi de la désignation ou du titre de l'oeuvre.

제 3 조

- ① 진본성에 관한 유보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품에 포함된 특정예술가의 서명이나 검인의 표시는 언급된 예술가가 본 작품의 실제작가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 ② 「의해서」 또는 「로부터」라는 용어에 이어서 예술가의 명칭이 언급된 경우도 전항과 같다.

- ③ 작품명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예술가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도 전항과 같다.

Article 4

L’emploi du terme “attribué à” suivi d’un nom d’artiste garantit que l’oeuvre ou l’objet a été exécuté pendant la période de production de l’artiste mentionné et que des présomptions sérieuses désignent celui-ci comme l’auteur vraisemblable.

제 4 조

『에게 부여된』이라는 용어에 이은 특정예술가의 언급은 해당 작품이 언급된 예술가의 활동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언급된 예술가가 본 작품의 진정한 작가임을 강하게 추정한다는 점을 보장한다.

Article 5

L’emploi des termes “atelier de” suivis d’un nom d’artiste garantit que l’oeuvre a été exécutée dans l’atelier du maître cité ou sous sa direction.

La mention d’un atelier est obligatoirement suivie d’une indication d’époque dans le cas d’un atelier familial ayant conservé le même nom sur plusieurs générations.

제 5 조

- ① 『의 작업장』이라는 용어 다음에 특정 예술가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해당 작품이 언급된 예술가의 작업장에서 또는 그의 지도하에서 제작되었음을 보장한다.
- ② 위의 작업장이 가족들에 의해 동일한 명칭으로 수 세대에 걸쳐 유지된 경우에는, 작업장의 언급 다음에 반드시 제작시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Article 6

L'emploi des termes "école de" suivis d'un nom d'artiste entraîne la garantie que l'auteur de l'oeuvre a été l'élève du maître cité, a notoirement subi son influence ou bénéficié de sa technique. Ces termes ne peuvent s'appliquer qu'à une oeuvre exécutée du vivant de l'artiste ou dans un délai inférieur à cinquante ans après sa mort.

Lorsqu'il se réfère à un lieu précis, l'emploi du terme "école de" garantit que l'oeuvre a été exécutée pendant la durée d'existence du mouvement artistique désigné, dont l'époque doit être précisée et par un artiste ayant participé à ce mouvement.

제 6 조

- ① 「과의」라는 용어 다음에 특정 예술가의 이름이 따르는 것은 해당 작품의 작가가 언급된 예술가의 수련생이었으며 특히 그의 영향과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보장한다. 이 용어는 해당 작품이 위 예술가의 생존 시 또는 사망 후 50년 이내에 제작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특정 장소가 언급된 경우, 「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해당 작품이 지정된 장소의 예술운동의 활동기간에 제작되었음을 보장하며, 이 경우 그 운동의 시기와 참여한 작가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Article 7

Les expressions "dans le goût de", "style", "manière de", "genre de", "d'après", "façon de", ne confèrent aucune garantie particulière d'identité d'artiste, de date de l'oeuvre, ou d'école.

제 7 조

「의 취향에서」, 「양식」, 「한 방식으로」, 「의 장르」, 「에 의거하여」, 「의 방법으로」 등의 표현은 작가의 신원, 작품의 시기 또는 학파에 관한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

Article 8

Tout fac-similé, surmoulage, copie ou autre reproduction d'une oeuvre d'art ou d'un objet de collection doit être désigné comme tel [*mentions obligatoires*].

제 8 조

한 예술품이나 수집품의 모든 모사, 거꾸집제작, 복제 또는 기타 재생산물은 사실 그대로 명시되어야 한다. [필수적 기재사항]

Article 9

Tout fac-similé, surmoulage, copie ou autre reproduction d'une oeuvre d'art originale au sens de l'article 71 de l'annexe III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xécuté postérieurement à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u présent décret, doit porter de manière visible et indélébile la mention “Reproduction” [*mentions obligatoires*].

제 9 조

본 테크레의 발효 이후에 시행되는 세법전 부칙 III의 제71조의 의미에서, 한 예술품 원본의 모든 모사, 거꾸집제작, 복제 또는 기타 재생산물에는, 눈에 띄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재생산」이라는 기재가 되어야 한다. [필수적 기재사항]

부 록

Article 10

Quiconque aura contrevenu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er} et 9 du présent décret sera passible des amendes prévues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제10조

본 데크레의 제1조에서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제5등급의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형에 처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식, “미술품의 가치판단과 시가감정”, Emotion, 2007년 겨울호
-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28호, 2005년 6월
- 남궁술, “유럽연합 소비재매매지침의 프랑스 국내법수용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27집, 2007년 8월
- 박우찬, “미술품 경매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미술세계, 1993년 3월
- 배득중, “문화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화정책”,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1992년 2월
- 정준모, “한국 미술시장의 미래를 위해”, Emotion, 2007년 겨울호
- 최병식, “한국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 -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경매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 문화경제연구, 제5권 2호, 2002년 12월
- 최병식, “외로운 전문영역, 미술품감정을 주목해야 한다 - 이중섭사건을 계기로 본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과제 -”, 월간미술, 2005년 5월
- E. Lhermitte, “De l’agrément des Experts par le nouveau conseil de vente : Loi du 10 juillet 2000”,
<http://www.argusbibliophile.com/agrement-experts.htm>
- P. J. Kiger, “Art Authentication”, <http://dsc.discovery.com>
- O. Tournafond, “Les prétendus concours d’action et le contrat de vente”, Dal. chr., 1989

참 고 문 헌

- Ch. Lachière, “Ombre et lumière sur les ventes d’oeuvres d’art”,
Petites affiches, 4 avril 2002, n° 68
- B. Edelman, “L’erreur sur la substance ou l’oeuvre mise à nu par les
artistes, même!”, Dal. Chr. 2003, n° 7
- A. Trocoire, “La cour de cassation au secours des victimes de l’art
contemporain : le tableau-piège se referme sur Spoerri”, Dalloz
Jurisprudence, 2006 n° 16
- J. Ickowicz, “L’auteur effectif s’étend de celui qui réalise ou exécute
personnellement l’oeuvre ou l’objet”, J.C.P. n° 24, 14 juin 2006
- 양현미(연구책임자),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
화정책개발원, 2000년
- 최병식(연구책임자), 한국미술품감정의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 E. Mckendrick, Contract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 Oxford Univ.
press, 2004
- Ph. Malaurie & L. Aynès & P.-Y. Gauthier, Les contrats spéciaux, Defrénois,
2005
- Ph. Malaurie & L. Aynès & Ph. Stoffel-Munck, Les obligations, Defrénois,
2005
- 프랑스 법령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 Les notions philosophiques I, PUF, 1990
- <독 미술관, 모네 위작 50년간 전시>, 연합뉴스, 2008. 02. 15 기사
- <이중섭 위작 2억여 원에 팔아>, YTN 2007. 11. 05 기사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감정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연합뉴스(인터넷판),
2005년 10월 9일 기사

http://www.vanweybergh.com/an_art_appraisal_is_not_an_authentication.htm

<http://www.encyber.com>

<http://www.christies.com>

<http://www.sothebys.com>

<http://www.sofaa.org>

<http://www.sothebysinstitute.com>

<http://www.oxfordauthentication.com>

<http://www.bada.org>

<http://www.britishmuseum.org/default.aspx>

<http://www.lapada.org>

<http://www.gurrjohns.com>

<http://www.christieseducation.com>

<http://www.cne-experts.com>

<http://www.sfep-experts.com>

<http://www.expertscnes.fr>

<http://www.fnepsa.fr>

<http://www.experts-arts.com>

<http://www.expert-cea.fr>

참 고 문 헌

<http://www.metiers.justice.gouv.fr>

<http://www.senat.fr/leg/PJL555.html>

<http://www.conseildesventes.com>

<http://www.commissaires-priseurs.com>

<http://www.ecoledulouvre.fr>

<http://www.iesa.fr>

<http://www.icartparis.com>

<http://www.groupeeac.com>

<http://www.ecole-maryse-eloy.com>

<http://www.bada.org/index.pl?id=2204>

<http://pages.ebay.com/sothebys/help/rulesandsafety/guarantee.html>